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김정곤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안보, 세계지역연구, 국제개발연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http://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http://www.kiep.go.kr)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김정곤 · 나승권

연구자료 25-12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 쇄 2026년 1월 30일  
발 행 2026년 2월 06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530-2 94320  
978-89-322-2064-2(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 국문요약

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급진전하던 1990년대 들어 ESG 이행, 동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의무 사항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망실사가 공급망 블록화의 수단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는 실사의무가 부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부분 산업의 중간재, 원자재 조달이 개도국 생산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바,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 강화는 한국에 중요한 현안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52개 국가에서 국가연락처(NCP: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grievance)에 따르면, 공급망실사 이행이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권, 고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침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급망실사 제도는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역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물 공급망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리스크가 중첩된 분야로, 공급망실사의 적절한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제는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급망실사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법 적용, 개도국 여건에 맞는 제도 적용, 개도국의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 기업들의 기본적인 실사 대응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 접근과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부족, 엄격한 실사 요구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협력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및 섬유, 농업 분야와 광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협력 내용은 노동환경 개선 및 최저임금 보장, 인권실사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광물 분야의 경우 자원 안보적 관점에서의 협력이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개도국의 제도·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기관 역량 강화,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공급망실사 역량 지원 사업을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급망실사 협력은 ① 국제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② 개도국의 공급망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지속가능 경쟁력 및 친환경 생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ODA의 전략적 활용, 통상협정과 연계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공급망실사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1

    1. 연구 배경 ..... 11

        가. 공급망실사의 개념과 내용 ..... 11

        나. 공급망실사의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 13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 16

**제2장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과 개도국에 대한 함의** ..... 19

    1. 개도국 공급망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9

        가. 공급망실사의 연원 ..... 19

        나. 주요 사건 ..... 21

        다. 국제 논의로의 발전 ..... 22

    2. 글로벌 규범으로의 발전: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논의 ..... 24

    3.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제도화 현황 및 특징 ..... 28

        가. EU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 28

        나. 유럽 주요국 ..... 31

        다. 기타 ..... 34

    4. 요약 및 시사점 ..... 35

**제3장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 ..... 40

    1.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 ..... 40

        가. 공급국(개도국)에 대한 영향 ..... 40

        나. 수요국에 대한 영향 ..... 45

2. 개도국의 도전과제 .....	49
가. 규범 수용 역량 강화 .....	51
나.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54
다. 기업 경쟁력 강화 .....	56
3. 국제협력 사례 .....	58
가. 다자 협력 .....	58
나. 양자 협력 .....	62
4. 요약 및 시사점 .....	69
<b>제4장 결론 .....</b>	<b>72</b>
1. 포스트-2030 시대 공급망실사 국제협력 .....	72
2. 정책 제언 .....	73
가. 한국의 정책 방향 .....	73
나. ODA와 공급망실사 연계 강화 .....	75
다. 통상협정과의 연계형 협력 모델 구축 .....	82
라. 국내 지원체제 개선 .....	85
<b>참고문헌 .....</b>	<b>87</b>
<b>Executive Summary .....</b>	<b>102</b>



## 표 차례

표 1-1.	한국의 원재료 품목별 수입 비중 변화	14
표 2-1.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25
표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23)의 주요 내용	26
표 2-3.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주요 내용: 2024년 승인(안) 기준	29
표 2-4.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채택에 따른 EU 지속가능 실사 개정 내용	31
표 2-5.	유럽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도입 현황	33
표 3-1.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의 장애요인: 유형별	51
표 3-2.	World Bank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의 주요 프로젝트	61
표 3-3.	독일 실사 펀드의 주요 프로젝트	65
표 3-4.	공급망실사 규범화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	69
표 3-5.	공급망실사 관련 국제협력 사례: 유형별	71



## 그림 차례

그림 1-1.	공급망실사(due diligence) 절차의 개념도	12
그림 2-1.	개도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1983년, 2003년)	20
그림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시 고충사항	38
그림 3-1.	전환광물(transition minerals)에 대한 글로벌 수요 전망	43
그림 3-2.	광물 보유국의 공급망 리스크	44
그림 3-3.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기업 규모별 영향	45
그림 3-4.	ESG 의무에 대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7



##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수요국 기업 관점에서 본 공급망실사의 비용과 편익	48
----------	-----------------------------	----



## 약어 표기

	영문	국문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CIF	Climate Investment Funds	기후투자펀드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지속가능공급망실사 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DDF	Due Diligence Fund	독일 실사펀드
DG Justice	Directive General-Justice and Consumers	EU 집행위원회 법무총국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FI	European Forest Institution	유럽산림연구소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관리 시스템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FiA	Fishery Administration	캄보디아 수산청
FLA	Fair Labor Association	공정노동협회
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 행동계획
GIZ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국제협력공사
GVC	Global Value Chains	글로벌 가치사슬
HREDD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인권 및 환경 실사
IBS	Institute for Basic Science	기초과학연구원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무역진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JOGMEC	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일본 에너지 금속광물자원기구

영문		국문
KEITI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독일 공급망 실사법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경제산업성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NAP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CP	National Contact Points	국가연락사무소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기업책임경영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사회적 책임 국제기구
SASI	Sustainable Agricultural Supply Chain Initiative	지속가능한 농업 공급망 이니셔티브
SCCI	The Sialko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파키스탄 시알코트 상공회의소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유엔지뢰행동조직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지질조사국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VUCE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페루 원산지관리시스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1. 연구 배경

### 가. 공급망실사의 개념과 내용

공급망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는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976년 처음 수립되어 최근까지 개정되어 온 OECD의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2023년 개정판에 의하면, RBC는 정부들이 다국적기업에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 지구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sup>

공급망실사는 RBC 이행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절차로 정의된다.<sup>2)</sup> 공급망실사는 기업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인권, 환경, 뇌물, 소비자, 기업 지배구조 등의 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며, 기업의 ‘사업 관계(business relationship)’를 통해 연결된 영향까지 포함한다.<sup>3)</sup> ‘사업 관계’는 공급망 내에서의 사업 파트너,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투자 대상 기업, 고객 및 합작 투자 파트너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체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

1) OECD(2023a),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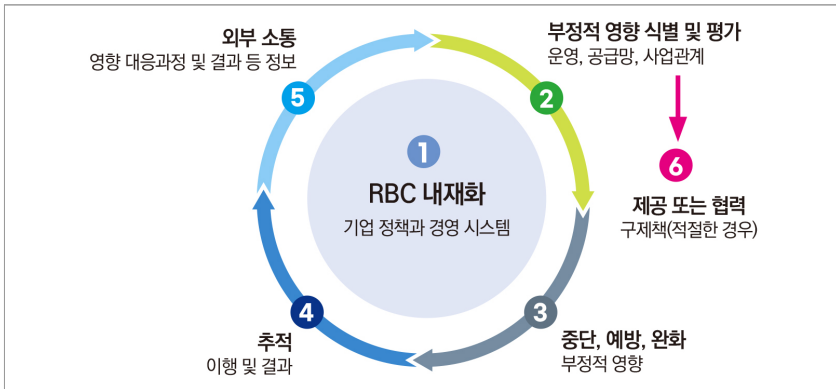
2) *Ibid.*, p. 17.

3) *Ibid.*, pp. 14-15.

는 주체들을 포함한다.<sup>4)</sup>

OECD가 2023년 발표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국가에서 운영되거나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모든 다국적 기업에 대해 소유 구조, 부문,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sup>5)</sup> 이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업책임경영(RBC)을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 ②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 ③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 예방 및 완화, ④ 이행 결과를 추적·관리, ⑤ 실사 정책, 과정,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다루기 위해 수행된 활동,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외부적으로 소통, ⑥ 기업이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했음을 식별한 경우, 해당 영향을 치유하기 위해 구제책(remediation)을 제공하거나 협력한다.<sup>6)</sup>

그림 1-1. 공급망실사(due diligence) 절차의 개념도



자료: OECD(2023b), p. 21.

4) *Ibid.*, p. 18.

5) OECD(2023b), pp. 9-10.

6) *Ibid.*, pp. 21-35.

공급망실사 제도가 확산되면서 많은 개도국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등 국가에서 공급망실사는 구속력을 갖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바, 개도국 기업의 무역·투자, 금융 접근성 등에 영향을 주어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고, 실사 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GVC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sup>7)</sup> 더욱이 공급망실사 제도가 지정학적 필터링 장치의 일환으로 작동하여 특정 국가 배제 또는 의존도 완화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다.

개도국 소재 기업과 사업 관계를 형성한 타국 기업들의 대응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자세한 내용은 3장 1절 참고). 즉 개도국의 공급자는 실사를 수행할 인력 및 재정 자원 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해당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사 규정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국의 빈곤율이나 취약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아동 노동의 증가, 인프라 및 법적 미비, 정보 부족 등은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sup>8)</sup> 이러한 요인은 개도국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9)</sup> 궁극적으로 개도국은 공급망실사 제도를 계기로 노동, 환경 등 자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나. 공급망실사의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생산비용에 기초한 전통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은 국제경제 체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변혁기를 거치고 있다. 진영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sup>10)</sup> 예컨대 인도가 미·중 경쟁하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기 시

---

7) 3장 1절 참고.

8) UNIDO(2022. 9. 28.),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emerging corporate due diligence laws for SMEs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8. 12.); Carry and Schöneich(2025), "Beyond the First Tier: Implementing Due Diligence in Raw Material Supply Chains"(검색일: 2025. 8. 25.); OECD(2018).

9) 3장 1절 참고.

작한 것은 인도의 정책 드라이브와 더불어 지정학,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의 중간재, 원자재 조달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의존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sup>11)</sup> 원재료, 중간재, 원재료 공급망을 안정화 및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수입 현황을 보면 중간재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원재료 수입 비중은 1996~98년간 제조업 수입에서 17.8%를 차지했으나 2020~22년 20.7%로 상승했다. 원재료 수입 가운데는 비철금속 광석의 비중이 1996~98년 3.9%에서 2020~22년 10.3%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제품(semi-finished)의 대부분이 광물의 정제련을 거친 품목들이다.<sup>12)</sup>

표 1-1. 한국의 원재료 품목별 수입 비중 변화

(단위: %)

	원유·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광석
1996~98년	66.8	10.7	3.7	3.9
2020~22년	58.1	13.8	7.8	10.3

자료: 방호경 편(2024), p. 103.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원재 수입처 다변화, 규제 적용 등은 한국의 수출, 투자기업에 규제 적응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대외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수입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개도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13)</sup>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실사는 규제 적응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10) Aiyar, Malacrino, and Presbitero(2024).

11) 임소영 외(2024), p. 12.

12) 방호경 편(2024), pp. 101~103.

13) 위의 자료, pp. 161~162.

하나로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고충 사항(grievance)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sup>14)</sup> 제조업, 광업 분야는 공급망실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공급망실사 이행 자체 및 이와 연계된 인권, 고용, 환경 문제 대응이 기업의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자세한 내용은 2장 4절 및 3장 참고).

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급진전하던 1990년대 들어 ESG 이행, 동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업에 실질적인 의무 사항으로 발전하였고,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되었다(2장 참고).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요인이 공급망 구축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면서,<sup>15)</sup> 공급망실사가 공급망 블록화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도입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노동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재편 수단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 EU의 「산림벌채 방지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수입기업이 특정 원자재(소·가축,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고무, 대두 등) 및 파생제품을 EU 시장에 들여오기 전에 생산지역이 산림파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실사·추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sup>16)</sup> 이 법에서는 국가별 위험 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국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실사 및 검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높은 삼림 벌채율을 보여온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표준 위험’ 국가로 분류된 반면, 벨라루스, 미얀마, 북한, 러시아가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었는데,<sup>17)</sup> 이는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

14) OECD(2025a).

15) Aiyar, Davide Malacrino, and Presbitero(2024).

16)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ation of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검색일: 2025. 10. 29.).

17) “EU brands just four countries as ‘high risk’ under deforestation law”(2023. 5. 23.)(검색일: 2025. 10. 29.).

이러한 여건에서 개도국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는 한국에 중요한 현안이다. 한국정부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4)에서 자원·소재의 안정적인 확보, ESG 이행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조했다.<sup>18)</sup> 이는 공급망 관련 개도국 협력이 단순히 자원·중간재 조달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자원 주권, 산업 선진화 의지 등에 부합하는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급망실사 등에 따른 한국기업의 수출·투자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개도국의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개발 금융,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공급망 협력이 해당 국가의 수요와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설계한다면 한국의 중장기 국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개도국에 대한 영향과 함의, 최근 공급망실사 제도의 변화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개도국이 당면한 대응과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EU 공급망실사 등 개별 제도 분석과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공급망실사 제도가 개도국에 제기하는 도전과제를 연구하여 한국의 개도국 협력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상과 같이 1장에서는 공급망실사의 개념과 내용, 한국에 대한 경제적 함의 등을 중심으로 연구 배경을 논하고,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

18) 관계부처합동(2024).

2장에서는 공급망실사의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공급망실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계기와 발전과정을 주요 사건과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OECD, UN, ILO와 같은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실제 공급망실사가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한 과정과 각 사례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EU 및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이 적용·도입 중인 공급망실사 규범의 주요 내용과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공급망실사 제도의 발전과정 및 관련 논의들이 개도국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를 경제적 영향, 주요 도전과제,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을 개도국(공급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그리고 광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이어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국(독일,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그리고 광물 조달과 관련된 영향을 정리했다. 둘째, 개도국이 공급망실사를 이행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셋째, 이와 연계된 다자간, 양자 간 국제협력 사례를 검토했다. 이상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실사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되, 최근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는 광물 분야에 비중을 두었다.

4장에서는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한국의 개도국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포스트-SDGs 시대를 염두에 둔 공급망실사의 발전 방향과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국제사회가 기업책임경영(RBC)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가운데, 공급망실사는 다양한 이슈가 혼합된 글로벌 협력과제로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공급망실사와 관련된 한국의 개도국 협력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특히 한국기업의 실사 대응비용을 낮추고, 신뢰 기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리스

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도국 공급망실사 협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셋째, ODA와 공급망실사 연계 강화, 통상협정과의 연계형 협력모델 구축, 그리고 기업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 제2장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과 개도국에 대한 함의

### 1. 개도국 공급망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가. 공급망실사의 연원

1990년대의 세계화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과거 사회주의 경제권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확장될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공간을 대폭 확장했다. 또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은 다자간 무역 규범을 재정립하며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었다. 1990년대 ICT 혁명이 지식의 이동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은 복잡한 원거리 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해외 이전이 실현되면서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단계 이전이 확산되었다.<sup>19)</sup>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국적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각국의 생산 역량을 활용하는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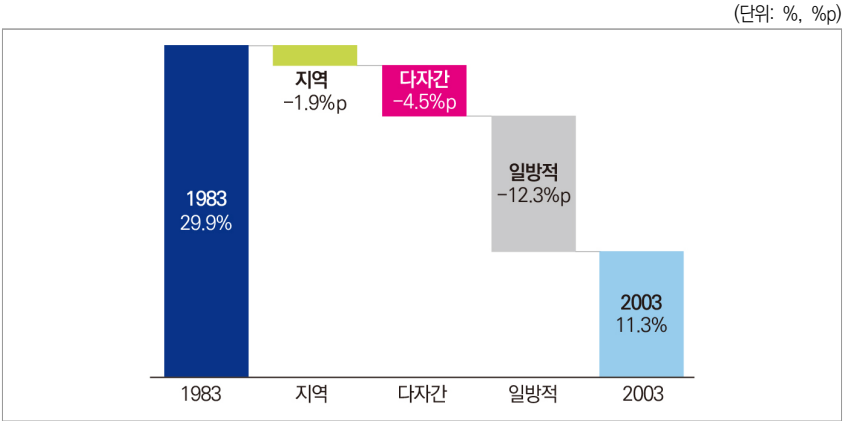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개도국은 그동안의 정책기조였던 보호주의에서 탈피하여 무역 자유화로 전환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외이전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장벽이 저해요인이 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sup>20)</sup>

19) 볼드윈(2016), 번역: 임창호(2019), p. 13.

20) 위의 자료, p. 115.

1983년 개도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applied tariff rates)은 거의 30%에 달했지만, 2003년에 이르러서는 11.3%로 떨어졌다. 관세율 인하분 가운데 일방적인 관세율 인하가 12.3%p로 관세율 인하폭의 2/3를 차지했다. 즉 개도국의 자발적인 의지가 당시의 글로벌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했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개도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1983년, 2003년)



자료: Irwin(2022), p. 42.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자유화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과 맞물려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는데,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이 그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으로의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낮은 임금, 느슨한 노동·환경 규제가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개도국의 생산 단가 하락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 예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청바지 제조 공장의 경우 1990년 1월부터 1991년 2월 사이 단위 가격이 2.18달러에서 1.87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이 기간 중 생산량은 일주일에 9,000벌에서 3,000벌로 2/3가 감소한 끝에 공장이 온두라스로 이전되었다. 이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공급망 내 노동 및 인권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sup>21)</sup>

## 나. 주요 사건

이러한 배경하에 낮은 노동·환경 규제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민사회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1990년대 공급망 논쟁의 상징적인 사건은 스포츠웨어 기업 나이키와 관련된 ‘반(反) 스웨트숍(anti-sweatshop)’ 운동이었다. 나이키 인도네시아 공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처음 폭로되면서<sup>22)</sup> 시작된 이 논란은, 1996년 『라이프(Life)』지에 파키스탄의 12세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사진이 실리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데에서 비롯되었다.<sup>23)</sup> 당시 나이키는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마케팅과 디자인에 집중하는 기업이며 공급업체인 독립 계약업체의 관행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민사회의 캠페인과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결국 나이키의 매출과 주가가 급락하며 심각한 재무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기업의 평판과 재무적 성과가 공급망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sup>24)</sup>

나이키 사건과 더불어 1996년 미국의 유명 연예인 캐시 리 기포드(Kathie Lee Gifford)의 의류 라인이 월마트 공급망 내 엘살바도르 공장에서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당시 공장에서 해고된 두 명의 근로자들이 보복 해고, 열악한 근무 환경, 무급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발했다. 이를 수용한 기포드는 나이키,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협력하여 의류 산업 파트너십(AIP: Apparel Industry Partnership)과 공정노동협회(FLA: Fair Labor Association)라는 자발적 행동 규범을 만들었다.<sup>25)</sup>

21) 우미애(2004), p. 187.

22) Michigan in the World, “Ending the Business of Injustice. Early Organizing Against Nike” (검색일: 2025. 8. 27.).

23) “Inside Nike’s Struggle to Balance Cost and Worker Safety in Bangladesh”(2014. 4. 21.)(검색일: 2025. 8. 27.).

24) Spar and Burns(2000).

25) Romer-Friedman(1999), “USAS Makes Kathie Lee Cry Again”(검색일: 2025. 8. 27.).

나이키와 캐시 리 기포드 사건은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전환시켰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압력은 윤리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을 야기하면서,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ESG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이슈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공급망실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가 폭로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코발트 광산 아동 노동 문제가 대표적이다. DRC의 소규모 광산들에서는 어린 이들이 보호 장비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코발트를 채굴하면서 하루 1~2달러의 품삯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전자기업들의 공급망에 이 코발트가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기업들은 “아동 노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으나, 공급망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sup>26)</sup>

## 다. 국제 논의로의 발전

위와 같은 사건들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공론화되는 가운데, 정부간 논의에서도 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역 +’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저임금 국가의 노동, 환경 기준을 개선하여 동등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형성하자는 것이 논의의 배경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인권, 윤리적 차원의 압력도 작용했지만, 낮은 노동·환경 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경쟁우위에 위협을 느끼는 선진국 소재 기업들의 경계심이 크게 작용했다.<sup>27)</sup>

---

26) 국제 앰네스티(2016. 1. 19.),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검색일: 2025. 8. 27.).

27) Hoekman and Kosteci(2009), p. 585.

이에 따라 무역협정에 노동 기준 준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WTO에서 제기되었지만, 개도국들의 반대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이러한 주장이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비교우위를 훼손하고,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sup>28)</sup>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행동 규범(Codes of Conduct)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ILO·UNICEF·파키스탄 시알콧 상공회의소(SCCI), 세계 스포츠용품 산업연맹과 미국 축구산업협회 등이 참여한 애틀랜타 협정(Atlanta Agreement, 1997)은 모니터링·등록제 등 공급망 통제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이탈된 아동에 대한 재활 지원을 제공하며, 신규 사례 예방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sup>29)</sup> 이는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지역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한 멀티스тей크홀더(Multi-stakeholder)형 공급망실사의 초기 사례이다.

한편 환경 경영표준 ISO 14001(1996), 독립적 비영리 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7), 미국 노동부 산하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가 도입한 노동·인권 인증형 표준 SA8000(1997), 영국에 기반을 둔 다자 거버넌스형 연합인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1998), 대학, 비영리단체, 나이키 등 미국 의류업체들이 설립한 FLA(Fair Labor Association, 1999) 등은 자발적이지만 공개적인 책임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며, 이는 투명성·감사·시정조치로 이어지는 현재의 공급망실사 프로세스와 연결된다. 또한 1998년 ILO 핵심원칙·권리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 노동 철폐·차별 금지)은 세계화 시대의 최소 사회 기준을 제시했으며, 다음 절에서 논의할 2000년

---

28) WTO, "Labour standards: consensus, coherence and controversy"(검색일: 2025. 8. 27.).

29) UNICEF, SCCI and ILO(1997); ILO(1997. 2. 14.), "ILO Unites With Industry Groups to Combat Child Labour"(검색일: 2025. 8. 2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개정은 인권·환경·공시 등 책임 영역을 포괄하는 정부권고 기준을 현대화했다.

## 2. 글로벌 규범으로의 발전: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논의

기업 차원의 공급망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는 특히 UN, OECD,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구체적인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공급망실사 관련 규정들이 차례로 수립되었다.

이 중 UN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권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공급망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 Council)가 2011년 채택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은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sup>30)</sup> 해당 지침은 크게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적절한 피해구제 등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31개의 인권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sup>31)</sup> 한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주요 근거(국제인권장전 및 ILO의 기본원칙 선언), 기업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책 성명서 작성 지침, 인권 문제

---

30)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UN Guiding Principles”(검색일: 2025. 7. 29.).

31) UNHR(2011).

에 대한 실사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EU 지속가능 실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한 다수의 공급망실사 제도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인권실사제도 수립과 관련하여 UN의 사례가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2-1.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등으로부터의 인권 침해 보호 의무</li> <li>•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이행방안(법을 적절성 평가, 사업체 지침 제공 등)</li> <li>• 국가기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실사 및 감독)</li> <li>• 다른 국가 및 기업과의 투자조약 혹은 계약 시 인권 의무 충족 유도 정책 이행</li> </ul>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인권 존중 책임의 근거: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원칙 선언</li> <li>•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책 성명서 작성 지침</li> <li>• 인권 문제에 대한 식별, 예방, 완화를 위한 실사 필요성 및 주요 내용</li> </ul>
적정한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인권 침해 보호를 위한 국가의 사법·행정·입법 수단 활용의 필요성</li> <li>•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사법적·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 제공 필요성</li> <li>• 기업 차원의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및 참여 필요성</li> </ul>

자료: UNHR(2011), pp. 3-35; 문진영 외(2022), p. 59 재인용.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당시 국제사회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동 지침의 도입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sup>32)</sup> 해당 지침은 1976년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The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부속서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23년 개정판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절차

32) International Trade Center for IL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검색일: 2025. 9. 1.).

를 거쳐왔다.<sup>33)</sup>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정책, 정보공개 의무, 인권, 고용 및 산업관계, 환경, 부패와의 투쟁,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 및 혁신, 경쟁, 조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4)</su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더불어 ‘EU 지속가능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이후의 다양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공급망실사 관련 지침 수립 시 핵심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23)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정책	지속가능 개발 달성에 기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존중, 지역사회와의 협조 및 역량 강화 지원, 인적 자원 형성 장려, 로비 활동의 투명성 및 정직성 확보,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의 발전 및 적용 등
정보공개 의무	회사의 재무·운영 실적, 기업의 목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자본 구조, 의결권 현황, 이사회 구성원 정보, 주요 임원들의 임금, 관련 당사자 거래,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 등
인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현지 국가의 국제적 인권 의무 및 관련 국내 법규 준수 의무
고용 및 산업관계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 존중, 단체교섭권 존중, 아동 노동 철폐, 강제 및 의무노동 금지, 인종 및 성별 등에 따른 종업원 차별 금지, 노동자들의 집단 합의 등에 도움이 되는 시설 제공, 고용조건 관련 협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환경	환경관리 시스템 수립 및 유지, 부정적 환경 영향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 심각한 환경 및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완화·통제 조치 시행,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제공,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부패와의 투쟁	공무원 및 협력사 직원에 대한 뇌물 지급 및 수수 금지, 적절한 내부통제 및 윤리 프로그램 수립, 대리인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제공, 뇌물 관련 대응에서 기업활동 투명성 강화, 뇌물대응 정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징계 절차 운영 등
소비자 이익	소비자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모든 기준의 충족을 보장, 소비자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한 사용·유지·처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의 투명한 운영, 소비자 교육 촉진 노력,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등
과학기술 및 혁신	과학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및 공유를 확대, 현지국 혁신역량 발전에 기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등
경쟁	가격고정 및 부정입찰 등 반경쟁적 활동의 제한, 경쟁당국 조사에 협조 및 관련 법령 준수, 경쟁법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원교육 강화
조세	현지 국가의 세법 및 관련 규정 준수(세액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협조 등), 세금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 채택

자료: OECD(2023), pp. 14-51.

33) OECD(2023), p. 3, p. 11.

34) *Ibid.*, pp. 14-54.

또한 2018년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기업실사 조항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실사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Q&A 등으로 구성된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발표하였다.<sup>35)</sup> 동 지침은 기업들이 공급망실사를 이행하는 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제 실사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실제 기업 실사의 범위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중 과학기술, 경쟁, 조세 등은 제외된다.<sup>36)</sup> 또한 기업실사 진행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 문제 확인 및 평가,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다.<sup>37)</sup>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또한 1977년 처음 채택한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이하 ‘다국적기업 선언’)'을 통해 특히 고용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sup>38)</sup> 1960~70년대 당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노동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ILO는 이와 관련한 규범 마련 차원에서 동 3자 선언을 도출 및 발표하였다.<sup>39)</sup> ILO의 다국적기업 선언은 정부,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훈련, 근로 및 생활조건, 노사관계 측면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장 관행을 위한 실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sup>40)</sup> 무엇보다 이 선언

---

35) OECD(2018), p. 3.

36) *Ibid.*, p. 10.

37) *Ibid.*, p. 21.

38)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MNE Declaration)”(검색일: 2025. 7. 3.).

39) ILO Geneva(2006),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검색일: 2025. 9. 1.).

40) ILO, “What is the ILO MNE Declaration?”(검색일: 2025. 7. 3.).

은 OECD 기업실사 지침의 인권부문 규정에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sup>41)</sup>

### 3.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제도화 현황 및 특징

#### 가. EU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EU의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도입 논의는 2020년 4월 EU 집행위원회 법무총국(Directive General-Justice and Consumer, 이하 ‘DG Justice’)이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sup>42)</sup> 이후 초기영향평가 발표 및 이에 대한 피드백, 온라인 공청회, EU 의회의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 및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sup>43)</sup>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하였다.<sup>44)</sup> 이후 이사회 및 의회에서 추가적인 논의 및 수정을 거쳐 2024년 4월 24일 EU 의회에서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같은 해 7월 25일 해당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sup>45)</sup>

의회에서 승인된 EU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지침(CSDDD)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SDDD는 EU 역내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직원 수 1,000명 이상이고,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비EU 기업의 경우 EU 내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41) OECD(2018), p. 11.

42) Working Group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uropean Commission promises mandatory due diligence legislation in 2021”(검색일: 2025. 7. 9.).

43) 문진영 외(2022), pp. 67~68.

44) European Commission(2022. 2. 23.),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Commission lays down rules for companie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in global value chains”(검색일: 2025. 7. 9.).

45)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검색일: 2025. 7. 9.).

다.46) 동 지침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기업 자체 운영, 자회사 및 기타 가치사슬 상의 비즈니스 파트너 운영 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47) 특히 최초 의회승인(안)에서는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NGO, 시민단체 등 간접적인 공급업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48) 또한 EU 개별 회원국들은 지침이 발표된 후 2년 이내에 CSDDD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49)

표 2-3.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주요 내용: 2024년 승인(안)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역내 기업: 직원 수 1,000명 초과 또는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혹은 모기업</li> <li>EU 역외 기업: EU 내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 기업 혹은 모기업</li> </ul>
실사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생명권·자유권·노동권 아동 노동 금지 강제노동 및 노예제 금지, 국제협약(ILO 핵심 협약·아동권리협약 등) 기반</li> <li>환경: 생물다양성 보호·폐기물·오염물질·오존층·세계문화 및 자연유산·해양 습지 등</li> <li>기후변화: 일정 규모 기업에 기후전환계획(transition plan) 수립 및 이사회 감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Scope 1·2·3 배출량 관리 요구</li> </ul>
시행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CSDDD 지침을 자국 법률로 이행하도록 의무화</li> <li>가장 큰 그룹(직원 5,000명 이상 또는 매출 15억 유로 이상)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실사 의무가 적용될 예정</li> <li>중견 및 중소기업, EU 역외 대기업에 대한 이행시점은 추가로 2028~29년 단계적 도입</li> </ul>

자료: EUR-Lex,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검색일: 2025. 7. 9.).

다만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CSDDD 등의 규정 간소화를 포함하는 지속가능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를 채택하였고, 4월 3일 EU 의회가 이

46) EUR-Lex,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검색일: 2025. 7. 9.).

47) *Ibid.*

48) *Ibid.*

49) *Ibid.*

에 대한 입법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CSDDD의 시행일정 연기 및 관련 규제 개정 등이 확정되었다.<sup>50)</sup> 먼저 시행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입법 전환기한은 1년 연장된 2027년 7월 26일까지로 변경되었고, 기업 적용시기는 기존의 1차(임직원 5,000명 및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및 2차(임직원 3,000명 및 순매출 9억 유로 초과) 적용기업 기준을 통합하여 종업원 3,000명 초과 및 순매출 9억 유로 이상 기업은 2028년 7월 26일부터, 기타 기업들은 2029년 7월 26일부터 적용된다.<sup>51)</sup> 그 밖에 기업실사 의무 대상 범위를 자회사 및 직접 협력사까지로 제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간접 협력사에 대한 실사의무를 면제하였다.<sup>52)</sup> 또한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해 실사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VSME (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SMEs) 기준으로 제한하고, 정기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53)</sup>

한편 2025년 10월 유럽 의회가 법사위원회(JURI, Legal Affairs Committee)의 옴니버스 패키지 채택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sup>54)</sup> 11월 유럽의회 재표결에서 유럽 인민당 등이 제안한 수정 채택안이 가결된 이후 2025년 12월 16일에 최종 승인되면서 이행이 확정되었다.<sup>55)</sup>

50) European Parliament, "Omnibus I - sustainability reporting - "stop the clock" proposal" (검색일: 2025. 7. 2.).

51)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simplification omnibus I and II"(검색일: 2025. 7. 2.).

52) EUR-Lex,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검색일: 2025. 7. 3.).

53) *Ibid.*

54) European Parliament(2025. 10. 22.), "MEPs to vote on simplified sustainability and due diligence rules in November"(검색일: 2025. 11. 12.).

55) 「2025. 11월 말, 지속가능성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1에 대한 유럽의회(EP)의 주요 결정 사항(CSRD 및 CSDDD)」(2025.11. 28.)(검색일: 2025. 12. 18.); "EU Parliament Approves Omnibus Agreement to Cut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2025. 12. 16.)(검색일: 2025. 12. 18.).

표 2-4.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채택에 따른 EU 지속가능성 실사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공급업체 위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 공급업체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공급업체만 포함</li> <li>• 간접 공급업체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li> </ul>
공급업체 모니터링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li> </ul>
비준수 공급업체 계약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종료 의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종료 의무조항 삭제</li> <li>• 신규 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li> </ul>
민사책임 (Civil Li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불이행 시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책임 조항 명시</li> <li>• 인권 및 환경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 제기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 책임 조항, 노동조합 및 NGO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삭제</li> <li>• 회원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가능</li> </ul>
기후 전환 계획 (Transition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전환 계획에 네 가지 항목 포함</li> <li>•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 계획에서 네 가지 항목이 삭제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으로 대체</li> <li>•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기후 전환 계획 '채택'만 의무화</li> </ul>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실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의무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대상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실사 요건 삭제</li> </ul>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 최대 한도를 전 세계 순매출액의 5% 이상으로 설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조항 삭제</li> <li>•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li> </ul>
회원국 규제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영역에서 회원국이 더 엄격한 요건을 도입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이 위험 평가 및 가치사슬 실사, 그리고 벌금에 대하여 더 엄격한 요건을 도입할 수 없음</li> <li>• EU 차원의 조화 수준을 높여 회원국의 자율성을 제한함</li> </ul>

자료: 법무법인 세종(2025. 3. 6.),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CSRD, CSDDD, EU Taxonomy 주요 개정안 분석」(검색일: 2025. 7. 8.).

## 나. 유럽 주요국

한편 EU CSDDD 지침 채택과는 별개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인권 혹은 환경 부문을 포괄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먼저 프랑스 「기업실사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 Loi de Vigilance)」<sup>56)</sup>의 경우 프랑스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중 종업원 수가 5천 명 이상이거나

나, 자회사를 포함한 종업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57)</sup> 이 법은 2017년 3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최근까지 별도의 추가 개정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21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독일 내 직원 수가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1,000명으로 축소되었다.<sup>58)</sup> 또한 실사대상 공급망은 직접 공급업체뿐 아니라 간접 공급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9)</sup> 다만 EU 지속가능 실사 도입에 따라 본 제도는 개정 또는 여타 법률로 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5년 5월 독일의 3당 연립 정부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폐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독일 내부에서도 법안 폐지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up>60)</sup>

네덜란드의 경우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Child Labour Due Diligence Law)」이 2019년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구체적 시행령(GAO: General Administrative Order) 마련과 감독기관 지정 등 세부 이행 체계가 지연되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EU CSDDD 논의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시행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1)</sup> 무엇보다 EU CSDDD가 2024년 7월 공식 발효되면서 각 회원국은 2027년 7월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

56) legifrance,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1)”(검색일: 2025. 7. 4.).

57) Respect international,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검색일: 2025. 7. 4.).

5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BMJV), “Gesetz über die unter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zur Vermeidung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Lieferketten”(검색일: 2025. 7. 4.).

59) *Ibid.*

60) 임팩트온(2025. 4. 13.), 「독일 연립정부, 독일 공급망 실사법 즉각 폐지 합의…EU 유니버্স 패키지로 대체」(검색일: 2025. 7. 3.).

61) A&O Shearman(2022. 10. 2.),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s: the Netherlands led the way in addressing child labour and contemplates broader action”; Trustrace(2022. 1. 25.), “Dutch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7. 9.).

해야 하므로,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법」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거나, EU 법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법령은 아동 노동에 한정된 실사법 이므로 프랑스·독일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은 편이다.

한편 영국은 지난 2015년에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도입한 바 있다.<sup>62)</sup> 동 규정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 등 인권실사 의무를 부과 하면서, 기업들은 매년 노예 및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성명서(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statement)를 발행해야 하며, 또한 해당 성명서에 공급망에서의 노예 방지 관련 정책 및 조치, 관련 성과지표 측정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sup>63)</sup> 노르웨이도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를 규정한 「투명성법(Transparency Act)」이 2022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스위스의 ‘스위스 의무규정(Swiss Code of Obligations)’에도 공급망실사 및 투명성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었다.<sup>64)</sup> 그 밖에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서도 공급망실사와 유사한 형태의 법령이 도입되었거나 법령 초안 등이 제안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된다.<sup>65)</sup>

표 2-5. 유럽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도입 현황

구분	국가 사례
공급망실사 법률 도입 국가	영국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프랑스 ‘기업실사의 무법(Duty of Vigilance Law, Loi de Vigilance)’, 독일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이탈리아 ‘기업책임법(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f Legal Entities, Companies and Associations Act)’, 노르웨이 ‘투명성법(Transparency Act)’, 스위스 ‘스위스 의무규정(Swiss Code of Obligations)’
법률 계류 중인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루마니아

자료: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62) GOV.UK, “Modern Slavery Act 2015”(검색일: 2025. 7. 4.).

63) legislation.gov.uk, “Modern Slavery Act 2015 - Explanatory Notes”(검색일: 2025. 7. 4.).

64)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65)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 다. 기타

미국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분쟁 지역의 광물 활용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급망실사 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가장 먼저 「연방 관세법 규정(제307조 Convict-made goods: importation prohibited)」에 따라 강제 노동, 죄수 노동 및/또는 강제 아동 노동을 포함하여 형벌 제재를 받는 노동에 의해 외국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과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sup>66)</sup> 2010년에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sup>67)</sup>에 「분쟁 광물 규정」(제1502조)을 도입함으로써 미국 상장기업들이 DR콩고 및 인접국가로부터 조달된 분쟁 광물의 사용 여부를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sup>68)</sup> 또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2022년 발효)」을 통해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sup>69)</sup>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는 자체적인 「공급망 투명성 법률(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을 도입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하는 대형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에는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유형 상품에 대한 직접 공급망에서 노예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70)</sup>

---

66) GovInfo.gov, “19 U.S.C. 1307—Convict-made goods: importation prohibited”(검색일: 2025. 7. 9.).

6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이재화 2019, p. 1).

68) GovInfo.gov,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검색일: 2025. 7. 9.).

69)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70)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The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검색일: 2025. 7. 29.).

그 밖에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은 주로 인권 실사와 관련하여 자국내 법령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법(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sup>71)</sup> 해당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제조 등의 과정에서 강제노동 혹은 아동 노동에 대한 위험예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sup>72)</sup> 호주 또한 인권실사 제도의 일환으로 2018년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sup>73)</sup> 동 법률에 따라 호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매년 호주 국내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sup>74)</sup> 일본 또한 2022년 발표한 ‘공급망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Responsible Supply Chains)’을 통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sup>75)</sup>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 인권정책 수립, 인권실사 실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시 구제조치 이행 등을 권고하고 있다.<sup>76)</sup>

## 4. 요약과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개도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편입되었지만, ‘바닥으로의 경쟁’ 논란이 제기됐다. 다국적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71) Canada Justice Laws Website, “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검색일: 2025. 7. 29.).

72)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2021), p. 20.

73)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 Department, “Review of Australia’s Modern Slavery Act 2018”(검색일: 2025. 7. 29.).

74) *Ibid.*

75)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22), pp. 2-4.

76) *Ibid.*, pp. 6-7.

느슨한 규제 환경을 찾아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착취·아동노동·환경파괴 문제가 드러났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확산되었다. 특히 나이키와 캐시 리 기포드 사건은 공급망 관리 미흡이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기업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다자기구의 행동규범과 표준을 잇달아 도입했으며, 이는 공급망실사 체계로 발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윤리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동등한 경쟁과 무역+노동+환경 기준 연계 논의로 이어지며, 현재의 공급망실사 제도의 토대를 형성했다.

기업 차원의 공급망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는 UN, OECD, ILO 등의 주도하에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해왔다. UN은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을 통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적절한 피해구제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31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OECD는 1976년부터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으며, 2018년에는 실제 실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ILO의 경우도 1977년 ‘다국적기업 선언’을 통해 고용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및 지침들은 실제 EU를 비롯한 각국의 공급망실사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이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련 지침들은 준거점이 된다.

이러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EU 및 전 세계 주요국들은 공급망실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EU의 경우 2024년 4월 지속가능공급망실사 지침(CSDDD)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2025년 2월 옴니버스 패키지 채택으로 시행 일정이 연기되고 간접 공급업체의 실사의무가 면제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개별국 차원에서는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타 지역의 국가들 또한 공급망실사 및 유사 법령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독일 및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체로 인권실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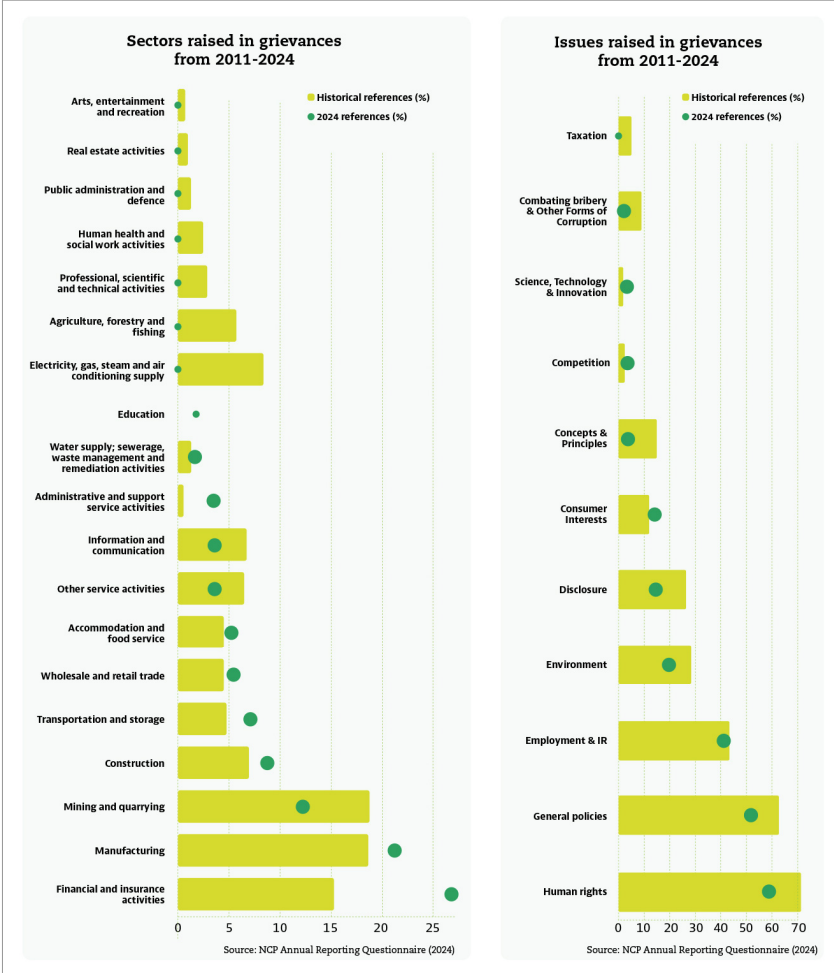
국들의 경우 EU CSDDD 발효에 따라 기존의 법령을 개정 및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는 실사의무가 부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다양한 공급망실사 규제 도입이 논의되는 이른바 다중규제 환경에 놓여진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52개 국가에서 국가연락처(NCP: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grievance)을 정리해 보면, 공급망실사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각국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인권, 고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침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으로 금융·보험(15건, 26.8%), 제조업(12건, 21.4%), 광업·채석(7건, 12.5%)에서 고충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해당 분야는 2011~24년의 누적 기준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충 이슈별로는 인권(33건, 58.9%), 일반정책(실사, 29건, 51.8%), 고용·IR(23건, 41.1%)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공급망실사 이행 자체(일반정책)가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인권, 고용, 환경 등이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준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 관련 52개 국가별 거점(NCP)을 통해 조사된 자료이나,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데 따른 개도국의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고충을 제기한 국가에 개도국 또한 상당수 포함된 점에서도 그러하며, 만약 기반 여건 및 제도의 집행역량 등이 미흡한 개도국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의 조사 결과보다 어려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시 고충사항

(단위: %)



자료: OECD(2025a), p. 5.

요컨대 공급망실사의 제도화는 인권·환경 등 글로벌 공공선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 한편, 이를 충족할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부족한 개도국에는 규제비용과 시장배제 위험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양면성을 지닌다. 즉 공급망실사 제도는 공급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행

을 위한 역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이행을 위해서는 규범 수용에 더해 인프라 확충, 기업 역량 강화 등 포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3장 참고). 나아가 개도국이 단순히 외부 규범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 및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다음 장에서는 공급망실사 제도화가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규범수용 역량 강화-실사 인프라 구축-기업 경쟁력 제고의 세 축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도전과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개도국 공급망실사 도입 지원을 위한 주요 국제협력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개도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수단 등을 식별하고자 한다.

### 1.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

#### 가. 공급국(개도국)에 대한 영향

##### 1) 긍정적 영향

공급망실사 이행 과정에서 기업은 데이터 관리, 보고 체계, 내부 감사 등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자산이 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기술과 공정혁신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바,<sup>77)</sup> 실사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실사 준수 여부가 투자 결정의 핵심 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실사를 통해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법적 소송이나 갈등과 관련된 분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sup>78)</sup>

공급망실사 규정은 공급망 투명성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수입업체에 대한 요건을 표준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sup>79)</sup> 자발적 지속가능성 기준(VSS: 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이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을 줄여 인증된 생산자의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는바, 유사한 긍정적 무역 효과가 실사를 준수하는 제품에도 발생하는 것을 기대될 수 있다.<sup>80)</sup>

77) UNCTAD(2025), p. 29.

78) OECD(2016), p. 59.

79) UNCTAD(2025), p. 29.

## 2) 부정적 영향

실사 규정은 개도국 기업들이 법률 지식 및 제도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실사 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 관리, 재정적 역량이 부족해 국제거래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다.<sup>81)</sup> 개도국 기업은 실사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 보고, 인증, 감시 체계 등의 규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 및 반복적인(recurrent) 비용은 특히 자원과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개도국 생산자,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sup>82)</sup> 또한 구매자가 실사 준수 비용을 반영해 구매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개도국 공급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sup>83)</sup>

실사 조치가 높은 경제적 부담을 부과할 경우, 이는 개도국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실제로 독일과의 무역 감소로 인해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의류 공장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겪었다.<sup>84)</sup>

개도국 기업이 실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구조적 배제 가능성도 존재한다.<sup>85)</sup> 해당 개도국에 소재한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될 경우 공급망 상위의 기업들이 특정 지역이나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이는 무역 왜곡 및 수출 전환으로 이어져 해당 국가의 무역·투자를 감소시키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86)</sup> 무역 전환 현상은 EU의 불법 벌목 방

---

80) *Ibid.*, p. 29.

81) EU(2020), p. 17; United Nations(2024), p. 36.

82) UNCTAD(2025), p. 34.

83) European Commission(2020), p. 85; UNCTAD(2025), p. 42.

84)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p. 16.

85) UNCTAD(2025), p. 34; Larsen(2022), "Supply chain governance is changing. What's at stake for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8. 13.).

86) UNCTAD(2025), p. 36; European Commission(2020), p. 326; UNIDO(2022. 12. 6.), "Sustainable supply chains in times of multiple crises"(검색일: 2025. 8. 13.); IISD(2023), "Due Diligence

지 규제(FLEGT) 도입 이후 열대 목재 제품 수출이 중국과 인도로 전환된 사례에서 관찰된 바 있다.<sup>87)</sup> 또한 독일 「공급망법」 도입 이후 지속가능성 표준 집행에 문제가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으로부터 의류 수입이 20% 이상 감소하는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났다.<sup>88)</sup> 한편 미국 「도드-프랭크법」 사례에서는 기업이 분쟁 지역에서 원자재 조달을 피하면서 무역 감소, 지역 생태계에 대한 영향, 심지어 영아 사망률 증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sup>89)</sup> 더욱이 강제적 실사 규정하에서 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증된 공급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바, 비인증 또는 역량이 부족한 생산자들의 배제가 심화될 수 있다(Lock-in Effect).<sup>90)</sup>

한편 강제적 실사 의무 프레임워크 없이는 개도국 현장에서 실제적인 이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sup>91)</sup> 즉 기업들이 강력한 집행과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실제적인 영향을 해결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실사 제도의 본래 의도인 개도국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광업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은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1 참고). 개도국은 이러한 자원의 주요 산지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sup>92)</sup>

---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Unexpec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검색일: 2025. 8. 25.).

87) UNCTAD(2025),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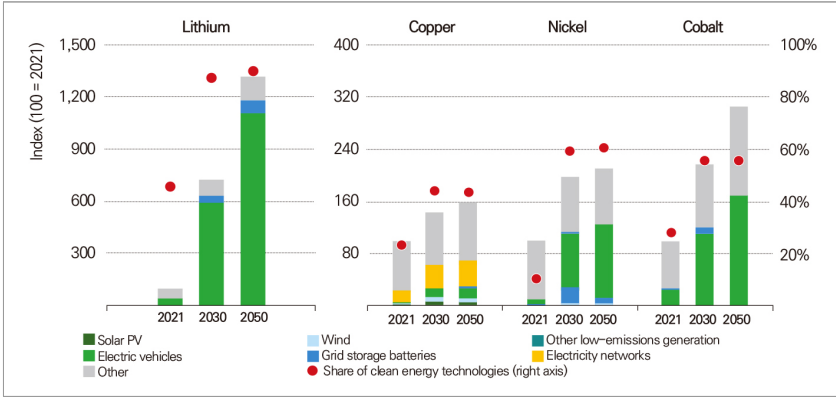
88)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p. 23 및 Wolfmayr *et al.*(2023)은 EU와 취약한 거버넌스 국가 간의 국제 무역이 크게 감소하여, 고위험 부문에서 EU 수입이 2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89) European Commission(2020), pp. 350-351.

90) UNCTAD(2025), p. 36.

91) European Commission(2020), p. 154.

그림 3-1. 전환광물(transition minerals)에 대한 글로벌 수요 전망



주: 전환광물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을 의미하며,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대표적이다.  
 자료: IEA(2023); OECD(2025b), p. 4에서 재인용.

많은 광물 보유국들이 부패, 분쟁, 보안 문제, 인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예컨대 앙골라 내전은 코발트 가격을 폭등시켰고, 중남미 구리 생산국에서는 노동 불안과 파업이 생산 중단, 투자 연기, 글로벌 구리 공급 차질 및 가격 변동성을 초래했다.<sup>93)</sup> 이와 같은 리스크는 전기차 등 첨단·친환경 제품 공급에 지장을 야기하며, 특정 광물(코발트, 알루미늄 등)은 공급 불안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된다.<sup>94)</sup> 한편 부패는 단기적인 사업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켜 해당 국가의 광물 공급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인이다(그림 3-2 참고).

이러한 배경하에 광물 공급망실사 규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 광물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은 기업이 고위험 지역을 회피하지 않고, 현지 사회가 위험을 완화하도록 도와 투자를 촉진하며, 광산 개발 소요시간을 단축

92) OECD(2025b), p. 4.

93) *Ibid.*,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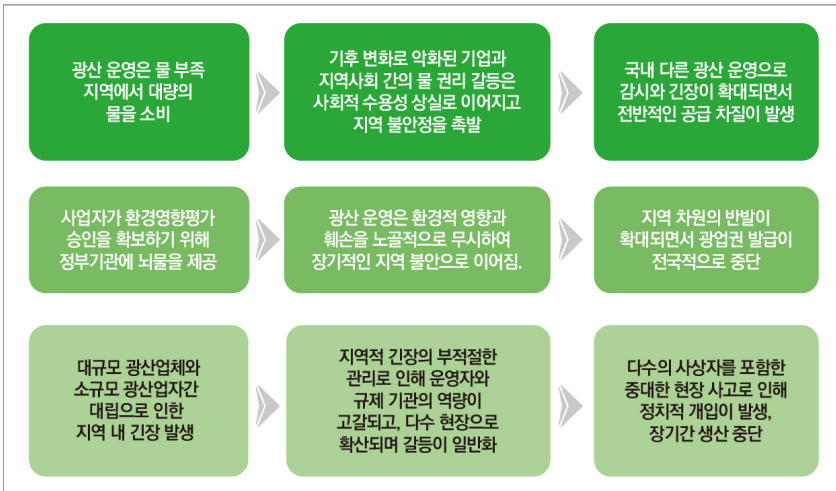
94) Berr, Hischier, and Wäger(2023); Jia, Meng, and Li(2025).

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유도하고자 한다.<sup>95)</sup>

광물 생산국 정부는 지역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수요 기업과 정부는 광물 생산국 정부와 협력하여 안보 개선, 근로자 인권 개선, 환경 영향 완화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전반적인 광물 부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실사 도입은 여기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책임 있는 광물 공급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투자자들이나 구매자들이 고위험 국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고위험 지역의 광업 발전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up>96)</sup>

요컨대 광물 공급에 대한 공급망실사는 단기적인 비용을 초래하지만, 책임감 있고 다각화된 글로벌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광물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 광물 보유국의 공급망 리스크



자료: OECD(2025b), p. 8.

95) OECD(2025b),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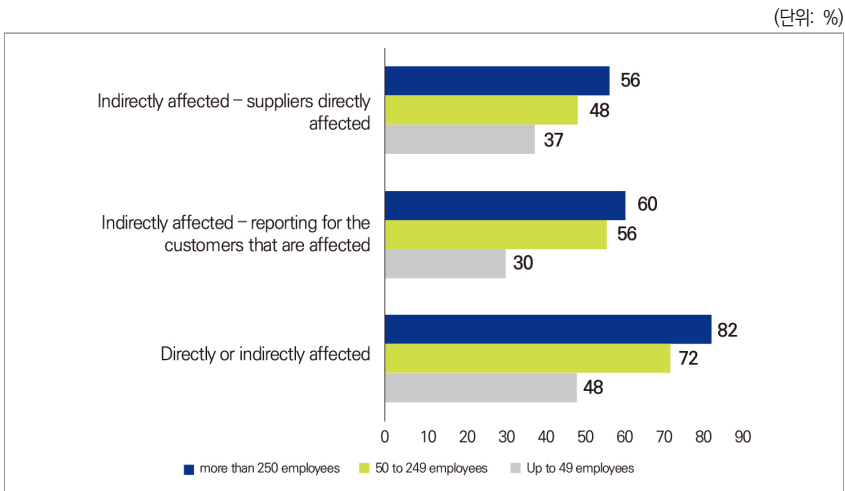
96) *Ibid.*, pp. 10-12.

## 나. 수요국에 대한 영향

### 1) 독일 기업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German Supply Chain Act)」 시행 1년 후의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sup>97)</sup> 이 법률 시행은 상당한 준수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특히 생산 조건이 덜 투명한 개도국 및 신흥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또한 규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 높은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그림 3-3.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기업 규모별 영향



자료: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p. 20.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12% 이상이 인권 및 환경 보호 기준이 높은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22%에 달한다. 고위험 국가, 즉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한 국가

97)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독일의 산업(industry) 및 산업 관련 서비스(industry-related service)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에서 활동을 철수하거나 공급업체를 변경하려는 기업도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약 7%가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실행했는데, 이는 특히 해외 생산을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은 높은 준수 비용으로 인해 생산을 다시 독일로 이전(리쇼어링)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모든 기업의 3%, 영향을 받는 기업의 6%)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이나 인접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이 높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니어쇼어링’ 추세도 나타났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직접 적용되는 대상 기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바, 많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보고해야 하거나 공급업체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고객에게 보고해야 하거나 공급업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그림 3-3 참고).<sup>98)</sup>

## 2) 한국 기업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ESG 규제 대응 현황 및 정책 과제를 조사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와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를 꼽았다. 기업들의 EU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에 대한 평균 대응 수준은 35점이며, 대기업의 대응 수준은 47점,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30점으로, 중소기업이 공급망실사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대부분(81.4%)은 공급망실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다’ 또는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9.3%에 불과했다.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51.9%,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16.0%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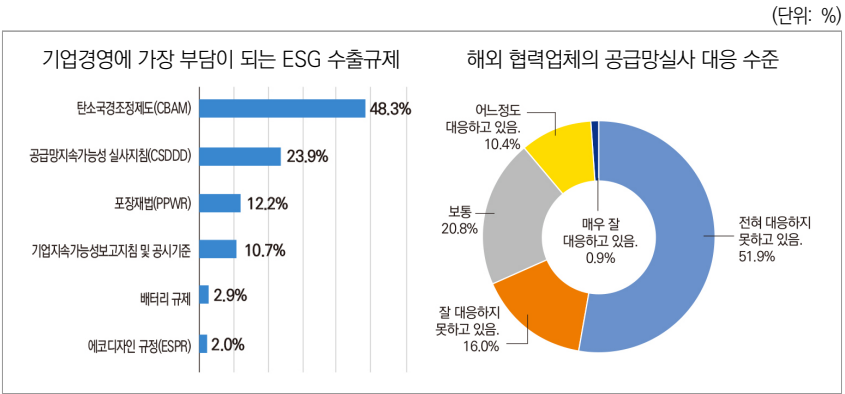
---

98)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으며,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sup>99)</sup>

요컨대 한국 내 수출기업들은 공급망실사 시행부터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규제에 대한 낮은 인식과 대응 수준, 비용 부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ESG 의무에 대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4), p. 2, p. 3.

### 3) 광업

상기한 바와 같이 개도국에서의 핵심광물 채굴은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협은 또 다른 분쟁, 투자 저해,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광산 프로젝트는 생산이 일주일 지연될 때마다 약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정결과도 있다.<sup>100)</sup> 첨단·친환경 제품의 공급망은 주요 광물을 보

99) 대한상공회의소(2024).

100) Davis and Franks(2014); Franks *et al.*(2014); OECD(2025b), p. 1에서 재인용.

유한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교란되며, 이를 사용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으로 유입되는 리튬이온 배터리(LIB) 셀은 리튬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용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sup>101)</sup>

광물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위해 위험요인을 간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당한 거래 및 부패로 인한 비용 증가, 투자 저해, 예측 불가능한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sup>102)</sup> 따라서 광업에 대한 공급망실사는 수요국들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sup>103)</sup>

### 글상자 3-1. 수요국 기업 관점에서 본 공급망실사의 비용과 편익

공급망실사 이행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편익은 실사 범위, 기업 특성, 측정 방법론, 비용 산정에 포함되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 창출의 기제로 볼 것인지가 기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시각을 결정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1월 옴니버스 제안(Omnibus proposal)을 내놓으면서 EU의 CSDDD(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침),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지속가능 활동에 대한 EU 분류체계(EU Taxonomy)가 규제 강도가 낮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EU 기업에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 비용 중심 사고가 EU의 규제 단순화를 탈규제로 끌고 가 지속가능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실사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 창출의 기제로서, △ 외부효과 가격 반영, △ 자본 배분 효율화, △ 리스크 이해(공급망 차질 등), △ 직원 동기 부여, △ 이해관계자의 신뢰 제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sup>104)</sup> 이러한 논거에 의하면, 규제 비용은 점차 감소하므로, 시행 초기에 규제를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ECD(2016)은 RBC 실사의 초기 구현비용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 운영 효율성, 평판, 위험관리 등에 걸쳐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OECD(2016)은 OECD의 5단계 실사 프레임워크를 토대로(그림 1-1 참고), 공급망실사 비용 측정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회성(One-time)과 경과성(Recurring)으로 구분한다. 일회성 비용에는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실사 정책 개발 및 재정 비용, 필요한 IT 시스템 조달 및 설치, 직원 및 공급망 파트너 교육 및 정보 제공 비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경과성 비용에는 업무 전담직원 비용,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데이터 집계 및 분석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sup>105)</sup>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101) Berr, Hischer, and Wäger(2023).

102) OECD(2025b).

103) G7의 핵심광물 행동계획(G7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4장 참고).

104) Rache and Kell(2025), "Sustainability 'Post-Omnibus' - In Search of a New Narrative" (검색일: 2025. 9. 8.).

기업 차원의 요인으로는 기업의 종사 분야, 사업 성격, 기업의 본거지, 조직 규모, 기존 RBC/실사 프레임워크, 사업 관계의 폭과 깊이, 주요 사업 파트너의 본거지 등이 있다.<sup>106)</sup> 또한 앞의 독일 기업 사례처럼,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급망실사의 직접적 편익은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제 및 위험 조기 감지 능력으로서, 위험 예방 및 완화는 규제 비용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손실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편익은 주가 상승, 자본 비용 감소, 브랜드 가치 향상, 공정 및 제품 혁신,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이다. 다만 이러한 편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과도하거나 부적합한 대응, 관료적 절차 도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sup>107)</sup> 공급망실사를 비롯한 RBC 기반을 갖춘 국가의 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준비도가 높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 비용 부담이 낮으며, 편익을 즉각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노르웨이와 스웨덴 기업의 사례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준수에 따른 비용보다는 그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과 같은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08)</sup>

## 2. 개도국의 도전과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급망실사 의무 법제화 등의 규제는 기업에 자신들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개도국의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복잡하고 엄격한 실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본절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공급망실사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도국들이 직면하였거나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과제를 선별하여, 이에 따른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05) OECD(2016), p. 12.

106) *Ibid.*, p. 46.

107) *Ibid.*, II. Literature Review.

108) KPMG(2024), "Review of the effects of the Norwegian Transparency Act": Swedwatch (2024), "Swedish firms' shareholder payouts show CSDDD costs are negligible"(검색일: 2025. 9. 8.).

이와 관련하여 공급망 실사규제에 따른 개도국의 도전과제에 대한 기존의 주요 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UNCTAD(2025)는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실사 대응과 관련한 장애요인을 규제적 장벽, 경제적 장벽, 지식 장벽, 사회적 장벽 네 가지 차원의 장벽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규제적 장벽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복잡성, 인식 부족, 법적 전문성 결여, 기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장벽은 실사 규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 장벽은 경제 주체들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고 실사 프레임워크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장벽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문화적 맥락과 전통 지식 또는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집행되는 실사 규정의 시행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Jia *et al.*(2018)은 개도국의 낮은 수준의 규제 및 집행력 약화, 지속가능성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제시한 바 있다. Carry & Schöneich(2025)는 공급망 실사 법률의 개도국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및 집행 역량 미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Ngangjoh-Hodu *et al.*(2023), Wuttke *et al.*(2022), Yang(2025), Sarfaty(2015) 등도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준수, 실사대응 역량 및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본절에서는 개도국이 공급망실사 규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제를 크게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3-1.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의 장애요인: 유형별

구분	주요 내용
규제적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복잡성, 인식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이행의 어려움</li> <li>•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공급망 배제</li> </ul>
경제적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실사 준수 비용</li> <li>• 엄격한 실사 요구사항으로 인한 금융접근성 악화</li> </ul>
지식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 노하우 부족: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과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li> <li>• 위험관리 도구 부족: 잠재적 위험 식별 능력 및 완화 능력 미흡</li> </ul>
사회적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실사 규정 시행에 대한 저항</li> </ul>

자료: UNCTAD(2025), pp. 33-34.

## 가.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은 공급망실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실사 규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실사 관련 법률이 기존 국내법과 충돌하여 법적 모호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적인 장벽은 주요 기업들이 취약한 특정 경제주체나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지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공급망실사 규정의 목표인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Sarfaty(2015)의 경우 근본적으로 공급망 규제는 정부가 규제 대상기업 자체에 규제 의무를 위탁한 것으로 해당 기업들은 자체 공급업체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감독 부족 및 투명성 결여와 같은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sup>109)</sup> 더 나아가 기업들이 규제 기능을 민간 컨설턴트나 다른 공급업체에게 다시 위탁하는 ‘규제 위탁의 연쇄(chain of outsourcing)’가 나타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sup>110)</sup>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와인 분야와 인도네시아의 임업 분야에서는 자국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109) Sarfaty(2015), p. 435, p. 454.

110) *Ibid.*, pp. 435-436.

현지 여건에 맞지 않은 제도 적용의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다.<sup>111)</sup>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개도국에서 이와 관련한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고 규제 집행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Azmat and Ha(2013)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통제, 모니터링, 제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Carry & Schöneich(2025)는 페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력한 환경 관련 법률을 도입하였으나, 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현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Jia *et al.*(2018)은 개도국들의 정책 실행력 부족의 구체적 요인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적절한 규제 목표 설정의 어려움, 검사 및 모니터링에 할당된 자원 부족, 현지 여건에 맞춘 규제 조정의 어려움,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의 취약성 등을 제시하였다.

Yang(2025) 또한 공급망실사 등 규정 집행 여건 미흡, 디지털 규제도구 부족 등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Yang(2025)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업 수에 비해 노동감독관 수가 상당히 부족하여 공급망실사 규정 집행에 상당한 규제 공백(regulatory vacuum)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sup>112)</sup>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는 노동감독관 대 기업의 비율이 ILO 권장기준인 1:8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2,300으로 나타났다.<sup>113)</sup>

이에 더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경우 기업, 인증기관, 정부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부패와 형식적인 준수가 보고되는 등 부패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sup>114)</sup> 실제로 공급업체들이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 라벨을 구매하거나 사기 행위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있으며, 정부기관에 대한 불법적 뇌물을 통해 규제 변경을 저지하거나 감사 시 가짜 문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 등도 확인되고 있다.<sup>115)</sup>

---

111) Jia *et al.*(2018).

112) Yang(2025), p. 9.

113) *Ibid.*, p. 13.

114) Jia *et al.*(2018).

115) *Ibid.*

또한 Ngangjoh-Hodu *et al.*(2023)은 DRC와 탄자니아 같은 국가들이 법치주의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sup>116)</sup> 실사규정 위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개도국의 규범 수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자국 내 규범과 국제기준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까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개도국들 또한 자체적인 노력 및 국외지원 등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인권계획(NAP: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NAP를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선진국 및 주요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sup>117)</sup>

그 밖에 개도국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시스템(SEIA),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등 환경보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 또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SEIA 개정, EPR 의무화 등 다양한 환경보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sup>118)</sup> 베트남의 경우도 「환경보호법」 개정(2020년)을 통해 환경영향평가(EIA) 체계 강화,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환경 모니터링 및 보고 투명성 확대, EPR 의무화, 기업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sup>119)</sup>

다만 국가적 차원의 인권계획 수립 및 환경보호 관련 제도 정비 등은 공급망 실사 규제 확산에 대비하는 기반 여건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실사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서 실제 실사

---

116) Ngangjoh-Hodu *et al.*(2023), p. 38.

117)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검색일: 2025. 9. 16.).

118) 외교부, 「칠레 친환경 산업 및 시장 동향」(검색일: 2025. 9. 16.).

119) 마켓인(2023. 4. 23.), 「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매장량 1위 칠레도 '국유화 선언」(검색일: 2025. 9. 16.).

규제와 관련한 각종 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나.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각국의 생산자들은 위험 평가, 관리계획 수행, 생산 관행 변경, 공급업체 역량 개발, 고충처리 메커니즘 설립 등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며, 그 규모는 공급망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sup>120)</sup> 그런데 개도국 중소기업들은 실사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며, 위험관리 도구의 부족으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능력도 미흡한 상태이다.<sup>121)</sup> 더 나아가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은 실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부 법률팀과 같은 전문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22)</sup> Wuttke *et al.*(2022)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대부분은 실사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며, 법적 지원 혹은 번역비용을 감당할 자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sup>123)</sup>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열악한 교통 및 물류 시스템, 불안정한 물 공급, ICT 인프라 부족 등 물리적 인프라 부족으로 실사 규정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sup>124)</sup> 특히 Yang(2025)는 개도국에 대하여 공급망실사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례로 케냐의 경우 농촌지역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부족(35%)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공급망 추적 시스템에 농장 데이터가 접근하지 못하는 등 ‘디지털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25)</sup>

---

120) UNCTAD(2025).

121) Hanley *et al.*(2023); IISD(2023).

122) Hanley *et al.*(2023).

123) Wuttke *et al.*(2022), p. 20.

124) ISS African Futures(2025. 5. 22.), “Africa has critical minerals but needs a unified strategy” (검색일: 2025. 8. 12.).

125) Yang(2025), p. 13.

그 밖에 개도국 현지 기업들의 공급망실사 관련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규정준수 기업과 불량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레몬 문제(Lemon Problem)’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운용역량 강화 등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데 반해 이에 따른 재정적 보상은 낮아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 실사 요건 준수를 위한 역량 강화 등 국제사회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up>126)</sup> 또한 UNCTAD(2025)는 개도국 기업들의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보조금, 훈련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27)</sup> Wuttke *et al.*(2022) 또한 공급망실사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동반해야 하며, 더 넓은 범위의 도구(예: 무역규칙, 산업정책)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8)</sup> 즉 공급망실사 규정이 이탈(divestment) 대신 구제(remedy)를 유도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29)</sup>

특히 UNCTAD(2025)는 개발도상국 소농민을 포함하여 생산자들이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공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집단 최저 가격(collective minimum prices)’ 설정 등의 프레임워크를 입법 조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sup>130)</sup> 이는 EU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해왔던 개념으로 생산자 조직과 구매자가 지속가능한 생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농장의 농부들이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충당하는 공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

126) UNIDO(2022. 9. 28.),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emerging corporate due diligence laws for SMEs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8. 12.).

127) UNCTAD(2025), p. 41, p. 43.

128) Wuttke *et al.*(2022), pp. 6-7.

129) *Ibid.*, p. 6.

130) UNCTAD(2025), p. 43.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sup>131)</sup> 즉 소농 혹은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 실사 지침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개도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이러한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주요 국제협력 사례는 이후 별도의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다. 기업 경쟁력 강화

그 밖에도 개도국 기업들이 공급망실사 규제 강화에 따라 겪는 다양한 애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경제 주체들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고 실사 프레임워크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132)</sup> 특히 행정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도국들의 불충분한 위험관리 도구 수준은 규정준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운영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sup>133)</sup> 이는 근본적으로는 개도국 정부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나, 우선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사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개도국 기업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엄격한 실사 요구사항으로 인해 고위험 산업의

---

131) *Ibid.*

132) *Ibid.*, p. 34.

133) *Ibid.*

기업 혹은 충분한 문서가 부족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sup>134)</sup> 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개도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활용이나 ‘집단 최저 가격(collective minimum prices)’ 등을 통한 소득보장 등도 단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Jia *et al.*(2018)은 개도국 내 공급업체와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점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국 정부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혹은 국제사회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생산자의 문화적 맥락과 전통 지식 또는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설계된 실사 규정에 대한 개도국 기업들의 저항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sup>135)</sup> 특히 국가간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특정 언어로만 제공됨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sup>136)</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련 규범 마련 논의에 개도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34) Jakulevičienė and Gailiūtė-Janušonė(2020).

135) UNCTAD(2025), p. 34.

136) *Ibid.*

### 3. 국제협력 사례

#### 가. 다자 협력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BetterWork' 프로그램은 글로벌 공급망 내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주로 의류 및 신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37)</sup> 'BetterWork'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성평등 및 포용성, 산업 안전 및 보건, 사회적 보호, 데이터 활용, 환경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성과 개선, 임금 등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sup>138)</sup> 주로 공장 방문 평가, 교육훈련 지원, 업계 세미나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개도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현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13개 국가의 2,289개 공장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sup>139)</sup> 본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아니나 개도국 기업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실사 강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OECD는 공급망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 수립의 주체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위한 국가연락처(NCP)를 주요 52개국에 설립하여 OECD 가이드라인의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 정부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40)</sup> 다만 NPC 설립이 각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보니, 아직까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 보다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다.<sup>141)</sup> 또한 OECD는 RBC를 위한

---

137) BetterWork, "The Programme"(검색일: 2025. 8. 12.).

138) BetterWork, "Better Work Strategy, 2022-27"(검색일: 2025. 8. 12.).

139) BetterWork 홈페이지(검색일: 2025. 8. 12.).

140) OECD, "National Contact Point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검색일: 2025. 8. 12.).

141) *Ibid.*

환경을 구축하는 데 관여하는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 및 정책 설계, 시행 및 집행과 관련한 각종 자문 혹은 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sup>142)</sup> 특히 지역 특화사업으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RBC 지원 프로그램을 EU의 지원을 받아 ILO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다.<sup>143)</sup> 동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를 대상으로 특히 광업 및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들의 공급망실사 대응역량 강화, 정부정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144)</sup>

OECD는 특히 지속가능한 핵심광물에 초점을 맞춘 가치사슬 지원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Critical Minerals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를 실행하고 있다. 총 9개 OECD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이니셔티브는 주요 핵심광물 생산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및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맞춤형 정책분석과 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요 핵심광물 생산국들과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개최할 계획이다.<sup>145)</sup>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2023년 발간된 『광물 공급망의 환경 실사 핸드북』 등과 같은 관련 지침 개발, ‘호주 필바라 광산 지역 및 도시 사례’, ‘칠레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광산 지역 및 도시’ 등과 같은 지역별 평가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sup>146)</sup>

한편 UNIDO의 경우 Global Gateway 및 Team Europe 이니셔티브 참여, 비영리기관 amfori와의 협약 체결(2022년 12월 13일)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공급업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해당 주요 개도국들의 공급망 지속가능

---

142) OECD, “Public policie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검색일: 2025. 9. 5.).

143)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검색일: 2025. 9. 5.).

144) *Ibid.*

145) OECD, “Making critical minerals work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검색일: 2025. 10. 17.).

146) *Ibid.*

성을 지원하고 있다.<sup>147)</sup> 일례로 UNIDO는 2018년부터 니카라과 광산 삼각지대에서 코코아 생산자들의 생산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sup>148)</sup>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수출제품의 품질 향상, 조직 및 사업 역량 강화, 고용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 농업 관행(good agricultural practices) 도입을 통한 코코아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이다.

또한 캄보디아 수산청(FiA: Fishery Administration)과의 협력 프로젝트인 ‘CAPFISH-Capture’를 통해 캄보디아 수산물 수확 후 가치사슬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sup>149)</sup> 이와 관련한 세부정책으로는 식품안전정책 지원, 글로벌 시장 요구사항과의 조화, 자발적 식품안전 인증제도 개발 및 시행, 가치사슬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한편 UNIDO는 가나의 국립청정생산센터와 협력하여 가나의 코코아 가공회사인 Niche Cocoa Industry의 ISO 50001 준수 에너지 관리 시스템(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교육훈련을 지원하였다.<sup>150)</sup> Niche Cocoa Industry는 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시스템 평가 및 최적화, 생산비용 절감, 목표 자원 효율성 측정 등을 통한 탄소 발자국 감소 목표를 달성하였다.<sup>151)</sup>

한편 UN 글로벌 콤팩트<sup>152)</sup>는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Think Lab의 핵심주제로 ‘공급망에서의 인권’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과정을 지원하고

---

147) UNIDO(2022. 12. 22.), “Supply chain governance is changing. What’s at stake for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9. 5.).

148) UNIDO(2023), p. 7.

149) *Ibid.*, p. 9.

150) UNIDO, “Case study: Niche Cocoa Industry Ltd”(검색일: 2025. 9. 5.).

151) *Ibid.*

152)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이 UN 글로벌 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해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기업시민 주도 이니셔티브이다[UN Global Compact(검색일: 2025. 9. 3.)].

있다.<sup>153)</sup> 실제 주요 협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비즈니스 실무자, 인권 전문가, UN 기구 및 시민사회 파트너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54)</sup>

World Bank는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RIS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광물 분야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투자확대 등을 통해 광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sup>155)</sup> 동 이니셔티브는 지침, 분석 및 역량 강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국의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광물자원 및 가공 활동 분석, 탈탄소화 기회 탐색, 도전과제 파악,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한 정보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sup>156)</sup> 주요 프로젝트로는 ‘구리 및 니켈 가치사슬을 위한 넷제로 로드맵’, ‘광업 분야의 기후 회복력 구축’, ‘기후 광물 익스플로러(Climate Mineral Explorer)’, ‘포레스트-스마트 마이닝(FSM: Forest-smart mining)’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표 3-2. World Bank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의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 프로젝트
CSM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t Zero Roadmap for Copper and Nickel Value Chains</li> </ul>
도구 &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ilding Climate Resilience in the Mining Sector</li> <li>• Climate Mineral Explorer(CME)</li> <li>• Forest-smart mining</li> <li>• The Business Case for Gender-Responsive Climate-Smart Mining</li> </ul>

153) UN Global Compact, “Think Lab on Human Rights in Supply Chains”(검색일: 2025. 9. 5.).

154) *Ibid.*

155) World Bank Group,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Home’(검색일: 2025. 9. 5.).

156) World Bank Group,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Projects’(검색일: 2025. 9. 5.).

표 3-2. 계속

구분	주요 프로젝트
지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rcular Business Model for Vanadium Use in Energy Storage</li> <li>• Minerals for Climate Action: The Mineral Intensity of the Clean Energy Transition</li> <li>• Sufficiency, Sustainability, and Circularity of Critical Materials for Clean Hydrogen</li> <li>• Competitiveness of Global Aluminum Supply Chains Under Carbon Pricing Scenarios for Solar PV</li> <li>• Reuse and Recycl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Lithium-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li> </ul>

자료: World Bank Group,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Projects'(검색일: 2025. 9. 5.).

World Bank RISE 프로젝트의 경우 청정에너지 및 광물 분야에서 개도국의 중류(midstream) 및 하류(downstream) 부문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2024년 2월 World Bank와 일본 간의 행정협정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157)</sup> 현재 일본 외에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영국 등이 총 5천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상황으로 개도국 핵심광물 시장에 대한 포괄적 분석작업 시행,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58)</sup> 동 사업은 광물 채굴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개도국들이 중류 및 하류 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159)</sup>

## 나. 양자 협력

EU는 Global Gateway, Switch Asia, 핵심광물 파트너십 포럼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157) World Bank Group(2024. 2. 23.), "World Bank and Japan Sign Administration Arrangement on RISE to Boost Investments in Supply Chains of Clean Energy"(검색일: 2025. 10. 14.).

158) *Ibid.*

159) World Bank Group,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RISE)"(검색일: 2025. 10. 14.).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EU가 글로벌 투자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Global Gateway는 콩고 민주공화국, 카자흐스탄 등의 개도국과 핵심광물 분야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60)</sup> 그 밖에도 Global Gateway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하여 ‘중양아시아의 핵심 원자재’, ‘잠비아의 핵심 원자재 파트너십 로드맵’,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리튬 및 구리에 대한 핵심 원자재 가치사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61)</sup> 각 사업은 다소 간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기술훈련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밖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업간 교류 촉진, 인프라 개발(도로, 항만, 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sup>162)</sup>

또한 ‘Global Gateway’의 하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Switch Asia’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sup>163)</sup> 동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의 환경적 성능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따라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64)</sup> 본 사업은 산업 플랜트 및 주택 에너지 효율, 농식품 및 어업, 섬유 및 가죽, 관광, 물류 및 운송 등의 분야에서 143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약 170만 유로의 EU 보조금이 투입되었다.<sup>165)</sup> 비교적 최근의 지원 사례로 필리핀의 ‘CARAGA 농식품 가치사슬의 그린 전환’, 인도의 ‘그린 스펀드: 인도 섬유 리사이클링 클러스터에서의 지속가능성 향상’, 인도네시아의 ‘팜 오일 지속가능성 및 추적 가능성 증진 프로그

---

160) European Commission(2024. 12. 11.), “Global Gateway: EU Endorses Roadmap for Strategic Partnership on Raw Materials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uropean Commission, “Strategic partnership with Kazakhstan on raw materials, batteries and renewable hydrogen”(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9. 30.).

161) European Commission, “Global Gateway - Climate and energy”(검색일: 2025. 9. 30.).

162) *Ibid.*

163) European Commission, “SWITCH Asia”(검색일: 2025. 9. 30.).

164) *Ibid.*

165) *Ibid.*

램’, 라오스의 ‘라오스 관광업 가치사슬에서 청년기업가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sup>166)</sup>

EU는 또한 주요 코코아 생산국인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코코아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 ‘지속가능한 코코아 이니셔티브(The Sustainable Cocoa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동 이니셔티브는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소득보장, 아동 노동 및 인신매매 근절, 코코아 생산지역의 산림 보호 및 복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EU-서아프리카 코코아 생산국 간의 다자 대화인 ‘Cocoa Talk’와 코코아 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LID: Living Income Differential)이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sup>167)</sup> 그 밖에 ‘Cocoa Talk’에서는 산림파괴 및 아동 노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코코아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 또한 도출되었다.<sup>168)</sup> 해당 프로그램은 EU를 통한 직접 관리와 함께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투자센터, 유럽산림연구소(EFI: The European Forest Institute) 등을 통한 간접 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심광물 파트너십 포럼(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여 핵심광물 생산국가들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sup>169)</sup> MSP 파트너로는 미국, EU 외에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그린란드, 카자흐스탄 등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MSP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이들 회원국을 대상으로 업체 및 기타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요 광물자원의 상업화를 지원

---

166) Switch Asia, “Project”(검색일: 2025. 9. 30.).

167) European Commission, “The Sustainable Cocoa Initiative”(검색일: 2025. 9. 30.).

168) European Commission, “Cocoa Talk 2022 Factsheet”(검색일: 2025. 9. 30.).

169) U.S. Department of States,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검색일: 2025. 9. 30.).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실사 펀드(DDF: Due Diligence Fund)’를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개도국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GIZ가 관리하고 있는 DDF는 「독일 공급망법」, ‘EU 지속가능 실사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 공급망 이니셔티브(SASI: Sustainable Agricultural Supply Chai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sup>170)</sup>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3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로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소규모 농장의 지속가능성 개선 및 농장 노동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71)</sup> 각각의 프로젝트는 GIZ의 지원하에 민간 부문 주체 및 공익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다.<sup>172)</sup>

표 3-3. 독일 실사 펀드의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 프로젝트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hancing traceability in raw cotton supply chains in Pakistan</li> <li>• Cross-company grievance mechanism in the cocoa sector</li> <li>• Generating new income opportunities for women through Gum Arabic harvesting</li> <li>• Recommendations for a joint grievance mechanism in the Brazilian coffee supply chain</li> <li>• Risk assessments of sourcing areas of botanical ingredients</li> <li>•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the cashew sector</li> </ul>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ffee Community Networks with Rural Women Leadership</li> <li>• Developing a Scalable Risk Analysis Tool to Prevent and Remedy Risks, especially for Women</li> <li>• Improving Livelihood and Resilience of Organic Cocoa Producers</li> <li>• Paving the Way to Better Cotton Traceability</li> <li>• Promoting Responsible Purchasing Practices of Natural Fragrance Supply Chains</li> <li>• A Farmer-Centric Digitization Approach to Due Diligence</li> <li>• Creating a Sustainable Value Chain for Groundnuts</li> </ul>

자료: SASI, “Funded Projects”(검색일: 2025. 9. 30.).

170) SASI, “Due Diligence Fund”(검색일: 2025. 9. 30.).

171) *Ibid.*

172) SASI, “Funded Projects”(검색일: 2025. 9. 30.).

그 밖에 GIZ의 공급망실사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IGS) 사례를 들 수 있다. IGS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구현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up>173)</sup> 특히 IGS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세르비아, 튀니지, 멕시코,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의 현지에 ‘책임 있는 비즈니스 헬프데스크(RBH: Responsible Business Helpdesks)’를 설립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인권 및 환경실사 기준 관련 자문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업체와의 연결, 관련 정보 제공 등 해당 국가 기업들의 실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sup>174)</sup> 최근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의류부문 개혁(2022~24년)’, ‘베트남 패션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책임 분담(2023~25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계약(2022~25년)’,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임금 설정(2023~25년)’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sup>175)</sup>

한편 일본의 경우 공급망실사에 대한 지원 사례는 ILO와 함께 진행하는 인권실사 대응 지원 프로그램과 JICA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개도국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공급망 인권실사 대응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자금을 지원하고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와 국제노동기구(ILO) 일본사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노동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실사 수행역량 강화 교육지원 및 일본 기업들의 모범사례 전파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176)</sup> 본 사업은 일본 기업들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며, 1차 사

173) GIZ,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검색일: 2025. 9. 30.).

174) *Ibid.*

175) GIZ(2025), “Paving the way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 Highlights of the Global Programme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IGS),” pp. 7-15.

176) ILO,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Phase II)”(검색일: 2025. 9. 30.).

업(2022~24년) 및 2차 사업(2024~26년)을 통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총 6개국이 파트너로 참여하였다.<sup>177)</sup>

일본 정부가 ILO와 진행하는 또 다른 지속가능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RISSC)’를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인권 및 노동권 문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및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험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sup>178)</sup> 태국(자동차 제조), 인도네시아(전자제품 제조), 필리핀(수산물 양식)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가능 공급망 육성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지원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sup>179)</sup>

일본은 JICA 차원에서도 SAFE(Facility for Supporting Agricultural supply chain and Food security Enhancement), ‘Project for Sustainable Coffee Supply Chain and Small-scale Farmer Support’ 등 지속가능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AFE는 개도국들의 농업 분야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5월에 설립된 투자기금으로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농가 지원, 취약국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수출입을 위한 긴급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sup>180)</sup> ‘Project for Sustainable Coffee Supply Chain and Small-scale Farmer Support’는 SAFE의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25년 승인되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

177) ILO,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 ILO,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Phase II)”(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9. 30.).

178) ILO,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RISSC)”(검색일: 2025. 9. 30.).  
179) *Ibid.*

180) JICA(2023. 5. 24.), “Establishment of the Facility for Supporting Agricultural supply chain and Food security Enhancement(SAFE)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Promoting private sector activities based on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10. 17.).

남의 소규모 커피 농가를 대상으로 구매자금 및 컨설팅 서비스(커피 인증, 기후 변화 적응 시범사업, 여성 농가를 위한 경영지침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sup>181)</sup>

또한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개도국 지원 사례는 JICA의 광물자원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JOGMEC(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등을 통한 공급망 구축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JICA는 대체로 광업 분야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Kizuna Program’을 들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Kizuna Program’은 개도국 광산 개발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해당 국가의 공무원, 대학의 연구자 및 교수를 대상으로 정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sup>182)</sup> 또한 일본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 현지로 광물 분야 전문인력 파견 및 개도국 공무원 등의 일본 내 연구 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183)</sup> 한편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안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JOGMEC은 공급망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개도국과 공동 탐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나미비아 국영기업(Namibia Critical Metals)과 협력해 중(重)희토류(디스프로슘, 터븀) 공급망을 공동 개발 중이며,<sup>184)</sup> 2024년 아프리카 각국과 희토류·코발트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과의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85)</sup>

---

181) JICA(2025. 10. 2.), “Signing of Loan Agreement for the “Project for Sustainable Coffee Supply Chain and Small-scale Farmer Support” in the Asia-Pacific Region(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Contributing to building resil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in the region”(검색일: 2025. 10. 17.).

182) JICA(2023), “Toward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table Supply of Mineral Resources ~Ten Years of the Kizuna Program~”(검색일: 2025. 10. 22.).

183) JICA, “Agreement for a Strategic Resource Partnership Signed with Akita University - Cooper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Mineral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10. 22.).

184) Innovation News Network(2024. 10. 9.), “Strategic partnership powers Namibia Critical Metals’ Lofdal deposit”(검색일: 2025. 10. 22.).

185) JOGMEC(2024. 3. 22.), “JOGMEC Signed an agreement with African countries to secure critical minerals”(검색일: 2025. 10. 22.).

## 4. 요약 및 시사점

공급망실사 제도는 개도국의 인권, 노동, 환경 기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광물 부문에서는 책임 있는 조달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가치를 창출하며,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망실사의 규범화는 개도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무역 전환, 취약계층 배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망실사 제도 도입은 개도국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도국들은 단순히 공급망실사 규범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과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기술 이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공급망실사가 개도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3-4. 공급망실사 규범화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

구분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비용	규제준수 비용 과중, 행정·보고 의무 강화	경영·투명성 강화, ESG 체계 정착
시장 접근	수출제한, GVC 배제 위험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대, 브랜드·평판 향상
투자·경제	투자 회피, 고용 충격	ESG 투자유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제도·정책	규제 장벽화·격차 심화	법·제도 정비 촉진, 거버넌스 개선

자료: 3장 1, 2절을 토대로 저자 정리.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개도국의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 과제를 본 연구에서는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규범 수용 역량 강화는 현재 공급망실사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복잡성, 개도국의 여건에 맞지 않

는 제도 적용, 개도국의 실행력 부족 및 부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이다. 둘째로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개도국 기업들이 실사 대응 시 겪게 될 각종 비용 부담 및 역량 부족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는 관련 데이터 접근과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부족, 엄격한 실사 요구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과제이다. 현재 개도국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대응과제와 관련하여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기된 도전과제의 대부분은 개도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각종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도 각종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와 연계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도입 및 실행되고 있다.

이에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협력 사례를 다자협력 및 양자협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및 섬유, 농업 분야와 자원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광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최소임금 보장, 인권실사에 대한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이에 비해 자원안보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협력이 좀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주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국제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EU의 경우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지원에, 일본의 경우 아세안 지역의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고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공급망실사 관련 국제협력 사례: 유형별

구분	주요 협력 사례(주관기관)
산업별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실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tterWork(ILO-IFC)</li> <li>•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일본 METI-JETRO-ILO)</li> <li>•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일본-ILO)</li> <li>•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IGS)(독일 GIZ)</li> </ul>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itical Minerals Initiative(OECD)</li> <li>• Climate-Smart Mining(World Bank)</li> <li>•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World Bank-일본 외)</li> <li>• Global Gateway-주요국과의 핵심광물 파트너십(EU)</li> <li>•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EU, 미국 외)</li> <li>• Kizuna Program(일본 JICA)</li> </ul>
농업 및 식품 공급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e Diligence Fund(독일 GIZ)</li> <li>• Sustainable Cocoa Initiative(EU)</li> <li>• CAPFISH-Capture(UNIDO)</li> <li>• Facility for Supporting Agricultural supply chain and Food security Enhancement-Coffee Supply Chain Project(일본 JICA)</li> <li>• 가나 코코아 EnMS(ISO 50001 에너지관리시스템) 교육(UNIDO)</li> </ul>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일본 METI-JETRO-ILO)</li> <li>•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일본-ILO)</li> <li>• Sustainable Cocoa Initiative(EU): 서아프리카 지역</li> <li>• RBC 지원 프로그램(OECD-EU-ILO-OHCHR):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li> <li>• Switch Asia(EU): 아시아 주요국</li> </ul>

자료: 본 보고서 제3장 3절(국제협력 사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만 현재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국제협력 사례는 EU CSDDD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망실사 분야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보다는 인권, 환경 등 특정 개별 이슈에 초점을 맞춘 지원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개도국 기업들의 실사 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비중이 비교적 큰 편으로, 이와 같은 지원수단은 어느 정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개도국 기업들이 공급망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수단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1. 포스트-2030 시대 공급망실사 국제협력

공급망실사는 지속가능성 이행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2024년 UN ‘Summit of the Future’에서 채택된 ‘Pact for the Future’는 지속가능한 투자, 기업책임경영(RBC), 글로벌 공공재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sup>186)</sup>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무역·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는 인도적, 무역정책적, 지정학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가 결부되어 있지만, SDGs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공급망실사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sup>187)</sup> 공급망실사 이행은 SDG8(양질의 일자리), SDG12(책임 있는 소비·생산), SDG13(기후행동), SDG16(제도·책임), SDG17(글로벌 파트너십) 등 SDG 핵심 목표군과 맞닿아 있다. 특히 포스트-SDGs는 이행(implementation)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바,<sup>188)</sup> 경제적 이익 외적인 측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실사의 초국경적 이행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도국에 공급망실사는 기회이면서 위협이다. 공급망실사는 한편으로 국제시장 접근성 확대, 투자 유치, 제도역량 강화 등 구조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ESG 보고 역량을 갖춘

186) United Nations(2024).

187) 이와 같은 시각은 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포함되어 있다. European Union(2024).

188) United Nations(2024), p. 3.

국가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금 유입과 기술 협력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EU·G7의 핵심광물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자국의 광물산업을 '표준기반 시장'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준수비용과 역량 격차와 같은 부담이 존재한다. 문서화·추적요건, 감사비용, 데이터 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개도국 공급업체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급망실사 미이행은 해외 기업과의 공급망 단절을 야기하여 지역경제 위축·실업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규범 수용과 역량 강화가 적절히 병행된다면 공급망실사는 개도국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협력 향상을 견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규제 중심 접근을 넘어, 제도·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실사 의무화와 동시에 개도국의 제도·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기관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공급망실사 역량지원 사업을 한 축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정책 제언

### 가. 한국의 정책 방향

상기한 바와 같이 공급망실사는 국제무역의 필수 규범이자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공급망실사 제도가 법제화되는 흐름은 한국 기업과 개도국 공급 파트너에 실질적인 규범 준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수행을 위한 제도·인프라·기업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위험에 노출된

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의식하여 페루는 발표 예정인 2030 통상전략에 공급망 실사 대응을 포함할 예정으로 전해진다.<sup>189)</sup> 개도국이 처한 리스크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부정적이다. 정부 지원을 통한 한국 기업의 규제 준수비용 완화는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며, 따라서 개도국의 실사 역량 강화는 한국의 산업·통상 전략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3장)에 의하면, 개도국이 직면한 실사 대응의 핵심 도전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제도의 정합성 및 규범 수용 역량 부족으로 인해 국제 기준에 맞춘 감독·보고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 둘째, 채굴·가공·운송 단계 전반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디지털 인프라 미비가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저해한다는 점, 셋째, 친환경·저탄소·공정무역 인증 확보 등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광물과 주요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들과의 협력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의 직접적 수단이 된다. 개도국이 국제 실사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규범과 추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해당 국가를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한국은 개도국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규범 도입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한국은 개도국과 같이 규제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바, 규제 템플릿, 시스템과 같은 적용 단계에서 우리의 표준을 개도국에 확산하면서 호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급망실사 협력은 3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① 국제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② 개도국의 공급망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지속가능 경쟁력 및 친환경 생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ODA의 전략적 활용, 통상협정과의 연계성을 도

---

189) KSP 관계자 면담(2025. 11. 10., KIEP).

모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공급망실사 이행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나. ODA와 공급망실사 연계 강화

### 1) 우리나라의 공급망실사 관련 ODA 사업

한국의 ODA 사업 가운데 공급망실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가 거의 없어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sup>190)</sup> 공급망실사와 연계된 한국의 ODA 사업은 현재까지 드물다. 관련 사례로서 페루에서 2021~22년간 수행된 ‘페루 원산지 증명·관세시스템 구축’은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페루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sup>191)</sup> 이어서 2024~25년간 KSP 사업으로 수행된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는 페루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VUCE(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의 기능을 개선하여 FTA 활용률을 높이는 정책 권고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VUCE에 원산지 결정 및 자체 발급 기능을 통합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 사업은 EU의 CSDDD와 같은 공급망실사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한국이 기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BOM(자재 명세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계산을 원산지 결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요소로

---

190)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는 2022년 OECD DAC 회원국 ODA 가운데 약 10%(183억 달러)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급망 ODA 규모가 2012년 약 3억 9,000만 달러에서 2022년 약 17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운송 및 저장(물류)과 같은 공급망 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공급망 ODA’는 CRS 원조 목적코드 가운데 선별된 것으로서, 공급망 ODA의 개념이 명확히 제시된 바는 없다. 공급망 ODA는 “개도국에 구축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공여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개도국과 공여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인프라 협력”으로 정의된다. 공급망 ODA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이미 추진되어 온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임소영 외(2024), p. 67.

191)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2025).

들면서, 한국의 FTA Korea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VUCE를 개선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컨설팅, 시스템 개발, 장비 공급, 역량 강화 훈련 등이 포함된다.<sup>192)</sup> 이 사업은 KOICA, EDCF와 같은 후속적인 지원수단이 연계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Sustainable Mine Action in Support of Conflict Affected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DRC’ (2018~19, 2022)는 KOICA와 UNMAS(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가 분쟁·폭발물 위험 제거를 통해 채굴지역의 안전·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sup>193)</sup> 공급망실사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DRC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ODA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 2)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공급망안정화법」(2024) 제정은 공급망실사-ODA 연계 전략의 주요한 출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 법은 단순한 위기관리를 넘어 양자·다자 협력, 해외 생산시설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을 결합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 및 규범 수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ODA 정책으로는 기업의 ESG 전략과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해 개도국의 고용창출, 민간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코이카 IBS-ESG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ESG 수요에 기반해 개도국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다국적 재원을 모아 개도국 기업이나 인프라에

---

192) VUCE 시스템 개선 이외에 사용자 교육 확대, 법적 조치 및 표준화, 향후 연구협력 기회 논의 등을 제안하고 있다. *Ibid.*

193) UNMAS(2022. 12. 2.), “Press release: KOICA and UNMAS signed the project cooperation agreement for “Sustainable Mine Action in Support of Conflict Affected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DRC”(검색일: 2025. 10. 27.).

직접 투자하는 혼합금융형[예: 기후투자펀드(CIF: Climate Investment Funds)]  
으로 나뉘 추진되고 있다.<sup>194)</sup>

한편 한국정부는 2025년 3월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함으로써, 핵심광물의 채굴-정제-재활용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sup>195)</sup> 이는 공급망실사와 ODA·정책금융의 결합 여지를 시사한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공급망실사를 포함한 개도국 공급망 협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협력을 통한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대내외 정책적 움직임은 공급망실사와 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정책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기술 공유(산업부 ODA, KSP 등)-실질적인 이행 지원(KOICA)-금융 지원(EDCF)의 종합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앞의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과 같이 한국의 시스템을 개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KSP로 파트너국의 실사 법·제도, 감독·보고체계 설계를 지원하고, KOICA 사업으로 제도 이행·교육·감독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EDCF를 통해 설비·IT 인프라 투자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단순 기술 지원에 여타 개발협력의 도구를 결합하면, 개도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

---

194) 코이카(2024), 「“국제개발협력과 ESG 경영 만나 더 나은 미래 밝힌다” 코이카,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소개」(검색일: 2025. 10. 27.).

195)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5),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Principals’ Meeting in Toronto”(검색일: 2025. 10. 30.).

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필요사항과 현지의 정책을 연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sup>196)</sup>

예시적으로 논의하면, 첫째,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설계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협력국의 실사 관련 법·제도 제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투명성·통계체계·보고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ODA를 투입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제3장에서 소개한 JICA Kizuna 사업을 참고하여, 공무원·엔지니어·품질관리자 대상 연수·현장실습 결합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급망실사는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이 핵심이며,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기술과 직결된다. ODA를 통해 한국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원산지 추적 시스템 등을 보급하면, 해당 국가와 우리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개도국에 확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FTA Korea) 플랫폼<sup>197)</sup>을 공급망실사 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도국에 디지털 공급망실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 기업이 자국의 환경·노동 데이터를 한국형 표준으로 보고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의 원산지관리시스템과 EU의 CBAM 인증체계를 연동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컨설팅 및 기술협력 ODA를 통해 현지 정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사 교육, 데이터 관리, 감사 절차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개도국 정부와 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면, 한국 기업은 한국과 동일한 시스템과 표준 하에서 규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개도국 기업의 친환경 공정 전환, 산업 안전 개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ILO/IFC의 Better Work와 같이 주요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현지

---

196) 예컨대 KSP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대국 고위급 관계자와 회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며, 이 과정에서 상대국의 수요를 고려한 보다 심화된 협력사업 개발이 가능하다.

197) 기업들의 FTA 원산지 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정보관리, 서류관리, 판정관리, 문서유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검색일: 2025. 10. 17.).

기업을 대상으로(분야를 특정할 수도 있다) 공급망실사 컨설팅-기업 현장 평가-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ILO 등 국제기구, 해당 국가와 협력하거나, 또는 단독으로(3장에서 소개한 독일의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 프로그램 참고) 거점 국가(예컨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를 대상으로 공급망실사 대응역량 강화, 정부정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망실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실사 교육, 데이터 관리, 현장 감사 절차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도국 생산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친환경성을 높이는 지원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서 2018~19년간 KSP 사업(공장설립을 위한 EDCF 사업 포함)으로 수행한 ‘Establishment of Food Animal & Animal Product Traceability and Quality Evaluation System’, 키르기스스탄에서 2024~26년간 KOICA 사업으로 추진되는 ‘Comprehensive Smart Animal Identification & Traceability System’ 등 유사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품목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EU의 Sustainable Cocoa·CAPFISH 참고). 아울러 분야별로 특화된 공급망실사 관련 소규모 프로젝트를 공모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독일 GIZ의 DDF(Due Diligence Fund) 참고).

넷째, 한국의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공급망실사 이행에 대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금융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공급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sup>198)</sup> 한국 기업의 해외 공급망실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198) “Eximbank to offer ₩200b loan support for supply chain firms”(2025. 1. 22.)(검색일: 2025. 10. 27.).

#### 4) 광물 공급망실사

2025년 6월 발표된 G7의 핵심광물 행동계획(G7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은 핵심광물 시장이 노동 기준, 현지 협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보장하고 오염과 토지 황폐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해결하여 책임 있는 채굴, 가공 및 거래에 드는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표준 기반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표준 기반 시장의 최소 기준을 구성하는 일련의 기준을 수립하여 추적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잠재적인 시장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sup>199)</sup> 이 계획은 핵심광물 공급망실사의 규범화 및 이행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한국이 개도국 대상 실사 역량 지원을 추진할 때 국제규범과의 연동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규범 적합성과 제도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파트너국의 법·제도·감독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EU의 책임광물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아래 도입된 ‘책임광물 보증 절차(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제도는 유럽 기업 공통의 공급망실사 기준으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00)</sup> 또한 한국도 참여한 MSP의 경우 공동탐사-정제-장기구매 패키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환경·노동 실사 조건이 내재화되고 이를 공동 모니터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 표준에 근거한 법제 자문, 공공부문 교육, 지침 표준화 등을 관련 ODA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대국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둘째, 채굴, 가공, 운송, 수출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사업장·환경·노

---

199) Government of Canada(2025).

200) European Commission(2025. 10. 16.), “First supply chain due diligence scheme recognised under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to facilitate compliance”(검색일: 2025. 10. 17.).

동 데이터를 수집·검증·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추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된 API, 전자원산지과 전자통관 시스템, 기업 보고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앞의 절 참고).

셋째, 현지의 사회·환경 안전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아동·강제노동, 산업안전, 수자원 오염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한 감시·시정·구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영세·소규모 채굴(ASM) 부문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도국 지역사회와 이익공유 모델이 자리 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OECD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RISE 프로젝트 등과 같이 개도국의 광물 분야 중류 및 하류 부문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분석, 기술, 환경실사·안전·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광산 지역의 성장 프로젝트(인프라·보건·직업훈련 등)를 결합한 패키지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지역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 3장의 국제협력 사례를 토대로 예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동남아 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니켈, 코발트 등의 생산(후보)지로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광산 생산량의 51%를 차지한다.<sup>201)</sup>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7년까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에서 가공·정제 시설을 확대해 배터리 원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현대, LG,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가 합작 투자로 동남아시아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sup>202)</sup> 한편 베트남은 니켈·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 채굴과 가공

---

201) Ghee(2024).

202) rest of world(2025), "Indonesia, home to the world's largest nickel reserves, struggles to achieve its EV dreams"(검색일: 2025. 10. 24.).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sup>203)</sup> 북부 베트남에서 배터리용 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생산을 염두에 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sup>204)</sup> 한국은 환경규제·노동기준 관련 교육 ODA, 친환경 제련·폐기물 관리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가능 생산체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배터리 소재 원산지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여 전자통관·물류 데이터를 연계하고, 실사 이행 기업에는 통관패스트 트랙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DRC·남아공 등)에서는 코발트·구리 벨트의 ASM 포용(ASM Inclusion)<sup>205)</sup>과 광산에서 항만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추적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환경 친화 정제·가공 사업을 통해 수질·대기 배출 모니터링과 산업안전 표준 운영체계 등을 마련하는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남미(칠레·페루 등)에서는 핵심광물 가치사슬의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치사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항만·내륙운송 MRV(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sup>206)</sup> 사업’을 통해 항만 및 도로의 배출량, 노동안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수출 물류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 다. 통상협정과 연계형 협력 모델 구축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대외협력 차원에서 우리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각종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 공급망실사에 대한 법제화 및 규제 강화 추세가 관찰되며, 이러한 규제 강화는 실질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 직

203) “What is Vietnam’s Mining Capacity for EV Batteries?”(2022. 5. 4.)(검색일: 2025. 10. 24.).

204) USGS(2024).

205) 본 보고서 3장 참고.

206) 이 구조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탄소감축 및 지속가능 물류 관리의 국제 표준 절차로 자리잡았다.

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 이행과 관련한 조항을 무역 혜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조치가 기업에 공급망실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노동환경 및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급망실사는 양자 간 통상협정을 통한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USMCA의 경우 환경, 노동 기준에 대한 실사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역내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sup>207)</sup> 일례로 USMCA 제23장(노동)에서는 강제노동, 아동 노동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장(원산지 규정)의 노동자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 기준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역내 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생산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sup>208)</sup> 또한 USMCA 제24장(환경)에서는 기업의 환경 책임 및 자발적 환경 관련 활동 장려, 무역 관련 환경법 집행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sup>209)</sup> 물론 미국이 ILO의 핵심 협약을 모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이며,<sup>210)</sup>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FTA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EU의 경우도 한-EU FTA를 비롯한 다수의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조항을 포함하는 등 노동과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EU CSDDD 시행으로 향후 FTA 등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 관련 지침이 연계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sup>211)</sup>

---

207) Rödl & Partner,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the Supply Chain based on Trade Agreements” (검색일: 2025. 10. 16.).

208)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7/1/20 Text”(검색일: 2025. 10. 27.).

209) *Ibid.*

210) 한국무역협회(2023. 4. 25.), 「美 노동-통상 전문가, “노동조항 이행 강화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적극 활용해야」(검색일: 2025. 11. 12.).

211) 강유덕(2022), 「EU의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 전략」(검색일: 2025. 10. 20.).

한편 미국은 핵심광물 분야에 한정한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협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3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핵심광물 협정(Critical Mineral Agreement)’은 IRA 전기차 세액 공제의 수혜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키기 위한 통상협정이나,<sup>212)</sup>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 및 다각화, 환경 및 노동법 이행 협력,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방지 규정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협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sup>213)</sup> 이후 EU 또한 미국과 핵심광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214)</sup>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미국-일본 핵심광물 협정과 유사한 방식의 제한적인 FTA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sup>215)</sup>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총 59개 국가와 22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해당 통상협정을 공급망실사와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국가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공급망실사 관련 조항을 경제협력 챗터에 포함함으로써,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우 공급망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역량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실사 의무 규정을 포함할 경우 개도국의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은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에 대한 협력 조항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12) 미국의 IRA 이행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과 같은, 미국과의 FTA 미체결 국가들은 별도의 제한적 FTA 등을 통해 사실상의 ‘FTA 체결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동 협정 또한 그러한 통상협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문진영 외 2023, pp. 85~86).

213) Congress.gov, “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검색일: 2025. 10. 28.).

214) Congress.gov, “Proposed U.S.-EU Critical Minerals Agreement”(검색일: 2025. 10. 28.).

215) “Indonesia Proposes Limited FTA with the United States”(2023. 6. 28.)(검색일: 2025. 10. 28.).

## 라. 국내 지원체제 개선

현재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실사 제도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먼저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ESG 공급망 컨설팅 정부지원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sup>216)</su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응을 위한 현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 및 국제인증 지원 등을 수행한다.<sup>217)</sup>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EU CSDDD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4월 환경분야(E)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준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sup>218)</sup> 대한상공회의소는 ESG 플랫폼 ‘으쓱’ 등을 통해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강연 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기업용 CSDDD 실사지침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 부처 및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상호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국내의 공급망실사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CSDDD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공급망 관리에 대한 지원까지 이르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특히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현지 개도국에서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른 기업 차원의 비용적·관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미

216)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검색일: 2025. 10. 17.).

2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 구축」(검색일: 2025. 10. 17.).

218) 한국ESG경영개발원(20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검색일: 2025. 10. 17.).

지역 등에서 철강 원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현지 업체들로부터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국내기업들이 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sup>219)</sup> 따라서 기업의 해외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SGS라는 인증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협력사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sup>220)</sup>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공급망 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19)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면담(2025. 7. 11., 대한상공회의소) 내용에 근거.

220) 위의 자료.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24.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 문진영, 윤상하, 박지원, 나승권, 이성희. 2022.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연구보고서 2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2023.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방호경 편. 202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및 방향: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볼드윈, 리처드(Baldwin, Richard). 2016.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번역: 엄창호. 2019. 『그레이트 컨버전스: 정보기술과 새로운 세계화』. 세종연구원.
- 우미애. 2004.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OECD의 역할: 생산의 저지대(低地代)화와 생산직 노동력의 가치절하에 대한 대책」. *OECD FOCUS*, 7월호.
-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2021. 「기업과 인권 지침서 - 실사(Due Diligence)가이드라인」.
- 이재화. 2019. 「미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Vol. 1. 국회입법조사처.
- 임소영, 박병열, 최정환, 강지현. 2024.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ODA 추진 방안」. 산업연구원.

### [영문자료]

- Aiyar, Shekhar, Davide Malacrino, and Andrea F. Presbitero. 2024. "Investing in friends: The role of geopolitical alignment in FDI flow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ume 83.
- Azmat, Fara and Huong Ha. 201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ustomer Trust, and Loyalty—Perspectives from a Developing

- Country.”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55(3), pp. 253-270.
- Berr, Marcus, Roland Hirschier, and Patrick Wäger. 2023. “Assessing Short-Term Supply Disruption Impacts within Life Cycle Sustainability Assessment—A Case Study of Electric Vehicles.” *Environ. Sci. Technol.* 2023, 57. 19678-19689.
- Davis, R. and D. Franks. 2014. “Costs of Company-Community Conflict in the Extractive Sect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Report*, No. 66.
- European Commission. 2020. *Study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quirements*.
- European Union. 2024.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Franks, Daniel M., R. Davis, A. J. Bebbington, S. H. Ali, D. Kemp, and M. Scurrah. 2014. “Conflict translates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into business costs.” *PNAS*, 111(21): pp. 7576-7581.
- Ghee, Peh. 2024. “Indoensia’s Nickel Companies: the Need for Renewable Energy Amid Increasing Production.”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 GIZ. 2025. “Paving the way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 Highlights of the Global Programme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 (IGS).”
- Government of Canada. 2025. “G7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 (June 17)
- Hanley, Aoife, Finn Ole Semrau, Frauke Steglich, and Rainer Thiele. 2023. “The cumulative effect of due diligence EU legislation on SMEs.”
- Hoekman, B. M. and M. M. Kostecki. 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WTO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2023. *Critical Minerals Market Review 2023*.
- Irwin, Douglas. 2022. “The World Bank, the IMF, and the GATT/WTO: Which institution most supported trade reform in developing econom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Jakulevičienė I. and D. Gailiūtė-Janušonė. 2020. “The scope of legal expectations from business in human rights: carrot or stick?”

-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Issues*, Vol. 8(2), pp. 932-946.  
VSI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Center.
- Jia, Fu, Laura Zuluaga-Cardona, Adrian Bailey, and Ximena Rueda. 2018.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ume 189, July 10, pp. 263-278.
- Jia, S., W. Meng, and S. Li. 2025. "Risks of mineral resources in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batteries." *Sci Rep* 15. 10142.
- Kolev-Schaefer, G. and A. Neligan. 2024. "Data-based results on the effects of the German Supply Chain Act: Due Diligence."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e. V. (IW).
- KPMG. 2024. "Review of the effects of the Norwegian Transparency Act."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2025. *2024/25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Peru Strengthening SMEs' Competitiveness with Certification of Origin in Peru*.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2. "Guidelines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Responsible Supply Chains (Draft)."
- Ngangjoh-Hodu, Yenkong, Tarcisio Gazzini, Avidan Kent, Kristian Siikavirta, and Parveen Morris. 2023. "The proposed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and its Impact on LDCs." A Legal Analysis.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 OECD. 2016. "Quantifying the Costs, Benefits and Risks of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_\_\_\_\_. 2018. "OECD Due Diligence Guidelin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_\_\_\_\_. 2023a.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_\_\_\_\_. 2023b.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_\_\_\_\_. 2025a. "National Contact Point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a changing landscape."
- \_\_\_\_\_. 2025b. "OECD Briefing Note: Responsible is reliable How responsible sourcing can address disruption factors and geopolitical risks in the supply of transition minerals."

- Sarfaty, Galit A. 2015. "Shining Light on Global Supply Chain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6, No. 2, pp. 419-463.
- Spar, Debora L. and Jennifer Burns. 2000. "Hitting the Wall: Nike and International Labor Practices."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700-047. January. (Revised September 2002)
- UNCTAD. 2025. "The future of sustainable trade: Due diligence initiatives, 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 and developing countries." Technical and statistical report.
- UNHR.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 UNICEF, SCCI, and ILO. 1997. "The Atlanta Agreement."
- UNIDO. 2023. "UNIDO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 United Nations. 2024. "Pact for the Future, Global Digital Compact and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 USGS(U.S. Geological Survey). 2024. "2022 Minerals Yearbook."
- Wolfmayr, Y., E. Christen, H. Mahlkow, B. Meyer, and M. Pfaffermayr. 2023.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ew Trade Policy Instruments." WIFO, Vienna.
- Wuttke, Tobias, Lise Smit, Asmita Parshotam, Alejandra Ancheita, and Abu Meridian. 2022.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in Global Value Chains: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South." SWP Working Papers, No. 2.
- Yang, Minghan. 2025. "Beyond Carrots and Sticks: How the EUs Hybrid Model Outperforms the USs Soft Touchand Builds Stair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Lecture Notes in Education Psychology and Public Media*, Vol. 112, No. 1, pp. 8-17.

#### [언론/보도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4.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12월 29일)
- 「독일 연립정부, 독일 공급망 실사법 즉각 폐지 합의...EU 옴니버스 패키지로 대체」. 2025. 『임팩트온』. (4월 13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18>(검색일: 2025. 7. 3.).
- 마켓인. 2023. 「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매장량 1위 칠레도 '국유화 선언」. (4월 23

- 일).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853206635579072>(검색일: 2025. 9. 16.).
- 법무법인 세종. 2025.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CSRD, CSDDD, EU Taxonomy 주요 개정안 분석」. (3월 6일).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750>(검색일: 2025. 7. 8.).
- 한국무역협회. 2023. 「美 노동·통상 전문가, “노동조항 이행 강화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적극 활용해야”」. (4월 25일). [https://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8E6C7AA805B212E6B02C5E69D2124225.Hyper?no=1832797&logGb=A9400\\_20230426](https://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8E6C7AA805B212E6B02C5E69D2124225.Hyper?no=1832797&logGb=A9400_20230426)(검색일: 2025. 11. 12.).
- 「2025. 11월 말, 지속가능성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1에 대한 유럽의회(EP)의 주요 결정 사항(CSRD 및 CSDDD)」. 2025.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3682>(검색일: 2025. 12. 18.).
- “EU brands just four countries as ‘high risk’ under deforestation law.” 2023. *Reuters*. (May 23).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brands-just-four-countries-high-risk-under-deforestation-law-2025-05-22/?utm>(검색일: 2025. 10. 29.).
- European Commission. 2022.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Commission lays down rules for companie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in global value chains.” (February 23).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just-and-sustainable-economy-commission-lays-down-rules-companies-respect-human-rights-and-2022-02-23\\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just-and-sustainable-economy-commission-lays-down-rules-companies-respect-human-rights-and-2022-02-23_en)(검색일: 2025. 7. 9.).
- \_\_\_\_\_. 2024. “Global Gateway: EU Endorses Roadmap for Strategic Partnership on Raw Materials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ecember 11).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news-and-events/news/global-gateway-eu-endorses-roadmap-strategic-partnership-raw-materials-democratic-republic-congo-2024-12-11\\_en](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news-and-events/news/global-gateway-eu-endorses-roadmap-strategic-partnership-raw-materials-democratic-republic-congo-2024-12-11_en)(검색일: 2025. 9. 30.).
- \_\_\_\_\_. 2025. “First supply chain due diligence scheme recognised under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to facilitate compliance.” (October 16).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first-supply-chain-due-diligence-scheme-recognised-under-conflict-minerals-regulation-facilitate-2025-10-17\\_en](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first-supply-chain-due-diligence-scheme-recognised-under-conflict-minerals-regulation-facilitate-2025-10-17_en)(검색일: 2025. 10. 17.).

- European Parliament. 2025. “MEPs to vote on simplified sustainability and due diligence rules in November.” (October 22).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1016IPR30956/meps-to-vote-on-simplified-sustainability-and-due-diligence-rules-in-november> (검색일: 2025. 11. 12.).
- “Eximbank to offer W200b loan support for supply chain firms.” 2025. *The Korea Herald*. (January 22).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404743?utm>(검색일: 2025. 10. 27.).
- ILO. 1997. “ILO Unites With Industry Groups to Combat Child Labour.” (February 14). <https://www.ilo.org/resource/news/ilo-unites-industry-groups-combat-child-labour?utm>(검색일: 2025. 8. 27.).
- “Indonesia Proposes Limited FTA with the United States.” 2023. *ASEAN Briefing*. (June 28). <https://www.aseanbriefing.com/news/indonesia-proposes-limited-fta-with-the-united-states/>(검색일: 2025. 10. 28.).
- “Inside Nike’s Struggle to Balance Cost and Worker Safety in Bangladesh.” 2014.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21).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3873604579493502231397942>(검색일: 2025. 8. 27.).
- JICA. 2023. “Establishment of the Facility for Supporting Agricultural supply chain and Food security Enhancement(SAFE)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Promoting private sector activities based on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May 24). [https://www.jica.go.jp/english/information/press/2023/20230524\\_32.html](https://www.jica.go.jp/english/information/press/2023/20230524_32.html)(검색일: 2025. 10. 17.).
- \_\_\_\_\_. 2025. “Signing of Loan Agreement for the “Project for Sustainable Coffee Supply Chain and Small-scale Farmer Support” in the Asia-Pacific Region(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Contributing to building resil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in the region.” (October 2). [https://www.jica.go.jp/english/information/press/2025/20251001\\_11.html](https://www.jica.go.jp/english/information/press/2025/20251001_11.html)(검색일: 2025. 10. 17.).
- JOGMEC. 2024. “JOGMEC Signed an agreement with African countries to secure critical minerals.” (March 22). [https://www.jogmec.go.jp/english/news/release/news\\_10\\_00057.html](https://www.jogmec.go.jp/english/news/release/news_10_00057.html)(검색일: 2025. 10. 22.).
- “Strategic partnership powers Namibia Critical Metals.” 2024. *Innovation News Network*. (October 9). Lofdal deposit. <https://www.innovation>

- newsnetwork.com/strategic-partnership-powers-namibia-critical-metals-lofdal-deposit/62368/(검색일: 2025. 10. 22.).
- UNIDO. 2022.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emerging corporate due diligence laws for SMEs in developing countries.” (September 28). <https://www.unido.org/news/understanding-implications-emerging-corporate-due-diligence-laws-smes-developing-countries>(검색일: 2025. 8. 12.).
- \_\_\_\_\_. 2022. “Sustainable supply chains in times of multiple crises.” (December 6). <https://www.unido.org/news/sustainable-supply-chains-times-multiple-crises>(검색일: 2025. 8. 13.).
- UNMAS. 2022. “Press release: KOICA and UNMAS signed the project cooperation agreement for “Sustainable Mine Action in Support of Conflict Affected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DRC”.” (December 2). [https://www.unmas.org/en/press-release-koica-and-unmas-signed-project-cooperation-agreement-sustainable-mine-action-support?utm\\_source](https://www.unmas.org/en/press-release-koica-and-unmas-signed-project-cooperation-agreement-sustainable-mine-action-support?utm_source)(검색일: 2025. 10. 27.).
- “What is Vietnam’s Mining Capacity for EV Batteries?” 2022. *Vietnam Briefing*. (May 4).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what-is-vietnams-mining-capacity-for-ev-batteries.html/?utm>(검색일: 2025. 10. 24.).
- World Bank Group. 2024. “World Bank and Japan Sign Administration Arrangement on RISE to Boost Investments in Supply Chains of Clean Energy.” (February 23).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4/02/23/world-bank-and-japan-sign-administration-arrangement-on-rise-to-boost-investments-in-supply-chains-of-clean-energy>(검색일: 2025. 10. 14.).

## [온라인 자료]

- 강유덕. 2022. 「EU의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 전략」. 『통상』, 9월호(Vol. 124). 산업통상자원부. [https://tongsangnews.kr/webzine/1682209/sub6\\_3.html](https://tongsangnews.kr/webzine/1682209/sub6_3.html)(검색일: 2025. 10. 20.).
- 국제 앰네스티. 2016.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1월 19일). <https://amnesty.or.kr/12375/>(검색일: 2025. 8. 27.).
- 외교부. 「칠레 친환경 산업 및 시장 동향」. [http://energia.mofa.go.kr/WZ/WZ\\_1903/html/new\\_report.html](http://energia.mofa.go.kr/WZ/WZ_1903/html/new_report.html)(검색일: 2025. 9. 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 구축」.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14M0.do>(검색일: 2025. 10. 17.).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https://k-esg.org/>(검색일: 2025. 10. 17.).

코이카. 2024. 「“국제개발협력과 ESG 경영 만나 더 나은 미래 밝힌다” 코이카,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소개」. [https://www.koica.go.kr/koica\\_kr/99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lMkYxNTElMkYzODYzMTUIMkZhcjRjbFZpZXcuZG8lM0ZwYWdlJTEN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YmJzQ2xTZXE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VTdHIlM0QlMjZyZ3NFbmkZVN0ciUzRCUyNmlzVmllld01pbmUlM0RmYWxzZSUyNnBhc3N3b3JkJTNEJTI2](https://www.koica.go.kr/koica_kr/99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lMkYxNTElMkYzODYzMTUIMkZhcjRjbFZpZXcuZG8lM0ZwYWdlJTEN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YmJzQ2xTZXE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VTdHIlM0QlMjZyZ3NFbmkZVN0ciUzRCUyNmlzVmllld01pbmUlM0RmYWxzZSUyNnBhc3N3b3JkJTNEJTI2)(검색일: 2025. 10. 27.).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https://www.origin.or.kr/lay1/S1T10C28/contents.do>(검색일: 2025. 10. 17.).

한국ESG경영개발원. 20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4월 23일). <https://kemi.re.kr/150/?bmode=view&idx=162362587>(검색일: 2025. 10. 17.).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 Department. “Review of Australia’s Modern Slavery Act 2018.” <https://consultations.ag.gov.au/crime/modern-slavery-act-review/>(검색일: 2025. 7. 29.).

A&O Shearman. 2022.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s: the Netherlands led the way in addressing child labour and contemplates broader action.” (October 2).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mandatory-human-rights-due-diligence-laws-the-netherlands-led-the-way-in-addressing-child-labour-an>(검색일: 2025. 7. 9.)

BetterWork. <https://betterwork.org/>(검색일: 2025. 8. 12.).

\_\_\_\_\_. “Better Work Strategy, 2022-27.” <https://betterwork.org/our-strategy/>(검색일: 2025. 8. 12.).

\_\_\_\_\_. “The Programme.” <https://betterwork.org/programme/>(검색일: 2025. 8. 1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BMJV). “Gesetz über die unter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zur Vermeidung von

-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Lieferketten.” <https://www.gesetze-im-internet.de/lksg/>(검색일: 2025. 7. 4.).
-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UN Guiding Principles.”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big-issues/governing-business-human-rights/un-guiding-principles/>(검색일: 2025. 7. 29.).
- Canada Justice Laws Website. “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 <https://laws.justice.gc.ca/eng/acts/F-10.6/page-1.html>(검색일: 2025. 7. 29.).
- Carry, Inga and Svenja Schöneich. 2025. “Beyond the First Tier: Implementing Due Diligence in Raw Material Supply Chains.” [https://www.sustainableupplychains.org/blog/beyond-the-first-tier-implementing-due-diligence-in-raw-material-supply-chains/?utm\\_source](https://www.sustainableupplychains.org/blog/beyond-the-first-tier-implementing-due-diligence-in-raw-material-supply-chains/?utm_source)(검색일: 2025. 8. 25.).
- Congress.gov. “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2517>(검색일: 2025. 10. 28.).
- \_\_\_\_\_. “Proposed U.S.-EU Critical Minerals Agreement.”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145>(검색일: 2025. 10. 28.).
- ESG Today. 2025. “EU Parliament Approves Omnibus Agreement to Cut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https://www.esgtoday.com/eu-parliament-approves-omnibus-agreement-to-cut-sustainability-reporting-and-due-diligence-requirements/>(검색일: 2025. 12. 18.).
- EUR-Lex.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1760/oj/eng>(검색일: 2025. 7. 9.).
- \_\_\_\_\_.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5PC0081>(검색일: 2025. 7. 3.).
- European Commission. “Cocoa Talk 2022 Factsheet.” <https://international->

- partnerships.ec.europa.eu/document/download/9d58c343-672c-4e11-b292-3d97644c4aae\_en?filename=Factsheet%20Cocoa%20Talks%202022.pdf(검색일: 2025. 9. 30.).
- \_\_\_\_\_.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sustainability-due-diligence-responsible-busines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sustainability-due-diligence-responsible-busines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검색일: 2025. 7. 9.).
- \_\_\_\_\_. “Global Gateway - Climate and energy.”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global-gateway/climate-and-energy\\_en#oe-list-page-filters-anchor](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global-gateway/climate-and-energy_en#oe-list-page-filters-anchor)(검색일: 2025. 9. 30.).
- \_\_\_\_\_. “Implementation of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 [https://greenforum.ec.europa.eu/nature-and-biodiversity/deforestation-regulation-implementation\\_en?utm](https://greenforum.ec.europa.eu/nature-and-biodiversity/deforestation-regulation-implementation_en?utm)(검색일: 2025. 10. 29.).
- \_\_\_\_\_. “Questions and answers on simplification omnibus I and II.”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615](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615) (검색일: 2025. 7. 2.).
- \_\_\_\_\_. “Strategic partnership with Kazakhstan on raw materials, batteries and renewable hydrogen.”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global-gateway/strategic-partnership-kazakhstan-raw-materials-batteries-and-renewable-hydrogen\\_en](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global-gateway/strategic-partnership-kazakhstan-raw-materials-batteries-and-renewable-hydrogen_en)(검색일: 2025. 9. 30.).
- \_\_\_\_\_. “SWITCH Asia.”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rogramming/programmes/switch-asia\\_en](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rogramming/programmes/switch-asia_en)(검색일: 2025. 9. 30.).
- \_\_\_\_\_. “The Sustainable Cocoa Initiative.”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rogramming/programmes/sustainable-cocoa-initiative\\_en](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programming/programmes/sustainable-cocoa-initiative_en)(검색일: 2025. 9. 30.).
- European Parliament. “Omnibus I - sustainability reporting - “stop the clock” proposal.”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package-simplification-business/file-first-omnibus-package-on-sustainability>(검색일: 2025. 7. 2.).
- GIZ.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 <https://www.giz.de/en/projects/initiative-global-solidarity>(검색일: 2025. 9. 30.).
- GovInfo.gov. “19 U.S.C. 1307—Convict-made goods; importation prohibited.”

-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DE-2011-title19/USCODE-2011-title19-chap4-subtitleII-partI-sec1307>(검색일: 2025. 7. 9.).
- \_\_\_\_\_.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ttps://www.govinfo.gov/app/details/PLAW-111publ203>(검색일: 2025. 7. 9.).
- GOV.UK. “Modern Slavery Act 2015.”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modern-slavery-bill>(검색일: 2025. 7. 4.).
- IISD. 2023. “Due Dilige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Unexpec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ttps://www.iisd.org/events/due-diligence-and-foreign-direct-investment-developing-countries-unexpected-challenges-and?utm\\_source](https://www.iisd.org/events/due-diligence-and-foreign-direct-investment-developing-countries-unexpected-challenges-and?utm_source)(검색일: 2025. 8. 25.).
- ILO.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 <https://www.ilo.org/projects-and-partnerships/projects/building-responsible-value-chains-asia-through-promotion-decent-work>(검색일: 2025. 9. 30.).
- \_\_\_\_\_.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 (Phase II).” <https://www.ilo.org/projects-and-partnerships/projects/building-responsible-value-chains-asia-through-promotion-decent-work-0>(검색일: 2025. 9. 30.).
- \_\_\_\_\_.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RISSC).” <https://www.ilo.org/projects-and-partnerships/projects/resilient-inclusive-and-sustainable-supply-chains-asia-rissc>(검색일: 2025. 9. 30.).
- \_\_\_\_\_.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MNE Declaration).” <https://www.ilo.org/about-ilo/organizational-structure-international-labour-office/ilo-department-sustainable-enterprises-productivity-and-just-transition/tripartite-declaration-principles-concerning-multinational-enterprises-and>(검색일: 2025. 7. 3.).
- \_\_\_\_\_. “What is the ILO MNE Declaration?” <https://www.ilo.org/resource/other/what-ilo-mne-declaration>(검색일: 2025. 7. 3.).

- ILO Geneva. 2006.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treaty-files/2890/download>(검색일: 2025. 9. 1.).
- International Trade Center for IL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ttps://training.itcilo.org/actrav\\_cdrom1/english/global/guide/oecd.htm](https://training.itcilo.org/actrav_cdrom1/english/global/guide/oecd.htm)(검색일: 2025. 9. 1.).
- ISS African Futures. 2025. “Africa has critical minerals but needs a unified strategy.” (May 22). <https://futures.issafrica.org/blog/2025/Africa-has-critical-minerals-but-needs-a-unified-strategy>(검색일: 2025. 8. 12.).
- JICA. 2023. “Toward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table Supply of Mineral Resources ~ Ten Years of the Kizuna Program~.” (August 21). [https://www.jica.go.jp/english/information/blog/1515998\\_24156.html](https://www.jica.go.jp/english/information/blog/1515998_24156.html)(검색일: 2025. 10. 22.).
- \_\_\_\_\_. “Agreement for a Strategic Resource Partnership Signed with Akita University -Cooper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Mineral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https://www.jica.go.jp/english/about/president/archives\\_tanaka/20131128\\_01.html](https://www.jica.go.jp/english/about/president/archives_tanaka/20131128_01.html)(검색일: 2025. 10. 22.).
- Larsen, Jenny. 2022. “Supply chain governance is changing. What’s at stake for developing countries?” UNIDO. [https://www.unido.org/stories/supply-chain-governance-changing-whats-stake-developing-countries?utm\\_source](https://www.unido.org/stories/supply-chain-governance-changing-whats-stake-developing-countries?utm_source)(검색일: 2025. 8. 13.).
- legifrance.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1).”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4290626>(검색일: 2025. 7. 4.).
- legislation.gov.uk. “Modern Slavery Act 2015 - Explanatory Notes.”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30/notes/contents>(검색일: 2025. 7. 4.).
-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 <https://iuslaboris.com/insights/supply-chain-due-diligence-laws/>(검색일: 2025. 7. 9.).
- Michigan in the World. “Ending the Business of Injustice. Early Organizing Against Nike.” <https://michiganintheworld.history.lsa.umich.edu/>

- antisweatshop/exhibits/show/exhibit/nike/nike\_org(검색일: 2025. 8. 27.).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5.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Principals’ Meeting in Toronto.” [https://www.mofa.go.kr/eng/brd/m\\_5676/view.do?seq=322753&utm](https://www.mofa.go.kr/eng/brd/m_5676/view.do?seq=322753&utm)(검색일: 2025. 10. 30.).
-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https://globalnaps.org/>(검색일: 2025. 9. 16.).
- OECD. “National Contact Point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ttps://www.oecd.org/en/networks/national-contact-points-for-responsible-business-conduct.html>(검색일: 2025. 8. 12.).
- \_\_\_\_\_. “Public policie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ttps://www.oecd.org/en/topics/public-policies-for-responsible-business-conduct.html>(검색일: 2025. 9. 5.).
- \_\_\_\_\_.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global-engagement-on-responsible-business-conduct/responsible-business-conduct-in-latin-america-and-the-caribbean.html>(검색일: 2025. 9. 5.).
- \_\_\_\_\_. “Making critical minerals work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https://www.oecd.org/en/topics/sustainable-mining-for-development.html>(검색일: 2025. 10. 17.).
- Rache, Andreas and Georg Kell. 2025. “Sustainability ‘Post-Omnibus’ In Search of a New Narrative.” <https://www.linkedin.com/pulse/sustainability-post-omnibus-search-new-narrative-andreas-rasche-8y0tf/>(검색일: 2025. 9. 8.).
- Respect international.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https://respect.international/french-corporate-duty-of-vigilance-law-english-translation/>(검색일: 2025. 7. 4.).
- rest of world. 2025. “Indonesia, home to the world’s largest nickel reserves, struggles to achieve its EV dreams.” <https://restofworld.org/2025/indonesia-ev-nickel-ban-global-investors/?utm>(검색일: 2025. 10. 24.).
- Rödl & Partner.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the Supply Chain based on Trade Agreements.” [https://www.roedl.com/insights/supply-chain-compliance/due-diligence-obligations-supply-chain-trade-agreements?utm\\_source=chatgpt.com](https://www.roedl.com/insights/supply-chain-compliance/due-diligence-obligations-supply-chain-trade-agreements?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10. 16.).

- Romer-Friedman, Peter. 1999. "USAS Makes Kathie Lee Cry Again." *Against the Current*, No. 83. November/December. <https://againstthecurrent.org/atc083/p921>(검색일: 2025. 8. 27.).
- SASI. "Funded Projects." <https://www.sustainable-supply-chains.org/funds-projects/due-diligence-fund/funded-projects/>(검색일: 2025. 9. 30.).
- \_\_\_\_\_. "Due Diligence Fund." <https://www.sustainable-supply-chains.org/funds-projects/due-diligence-fund/>(검색일: 2025. 9. 30.).
-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The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https://oag.ca.gov/SB657>(검색일: 2025. 7. 29.).
- Swedwatch. 2024. "Swedish firms' shareholder payouts show CSDDD costs are negligible." <https://swedwatch.org/publication/swedish-firms-shareholder-payouts-show-csddd-costs-are-negligible/?utm>(검색일: 2025. 9. 8.).
- Switch Asia. "Project." <https://www.switch-asia.eu/project/>(검색일: 2025. 9. 30.).
- Trustrace. 2022. "Dutch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January 25). <https://trustrace.com/knowledge-hub/dutch-child-labour-due-diligence-act/>(검색일: 2025. 7. 9.).
- UN Global Compact. <https://unglobalcompact.kr/about/un-global-compact/>(검색일: 2025. 9. 3.).
- \_\_\_\_\_. "Think Lab on Human Rights in Supply Chains." <https://unglobalcompact.org/take-action/think-labs/human-rights/>(검색일: 2025. 9. 5.).
- UNIDO. 2022. "Supply chain governance is changing. What's at stake for developing countries?" (December 22). <https://www.unido.org/stories/supply-chain-governance-changing-whats-stake-developing-countries/>(검색일: 2025. 9. 5.).
- \_\_\_\_\_. "Case study: Niche Cocoa Industry Ltd." <https://decarbonization.unido.org/resources/case-study-niche-cocoa-industry-ltd/>(검색일: 2025. 9. 5.).
- U.S. Department of States.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https://www.state.gov/minerals-security-partnership/>(검색일: 2025. 9. 30.).
-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7/1/20 Text." <https://ustr.gov/trade-agreements/>

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  
agreement-between(검색일: 2025. 10. 27.).

Working Group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uropean Commission promises mandatory due diligence legislation in 2021.” <https://responsiblebusinessconduct.eu/wp/2020/04/30/european-commission-promises-mandatory-due-diligence-legislation-in-2021/>(검색일: 2025. 7. 9.).

World Bank Group.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Home.’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climate-smart-mining>(검색일: 2025. 9. 5.).

\_\_\_\_\_.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Projects.’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climate-smart-mining/projects>(검색일: 2025. 9. 5.).

\_\_\_\_\_.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RISE).” <https://www.worldbank.org/en/programs/egps/brief/resilient-and-inclusive-supply-chain-enhancement>(검색일: 2025. 10. 14.).

World Trade Organization(WTO). “Labour standards: consensus, coherence and controversy.”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5\\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5_e.htm)(검색일: 2025. 8. 27.).

#### [전문가 면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면담(2025. 7. 11., 대한상공회의소).

KSP 관계자 면담(2025. 11. 10., KIEP).

##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eong Gon Kim and Seung Kwon Na

Supply chain due diligence emerged in the 1990s, during the rapid advancement of global division of labour, as part of ESG implementation and efforts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It became institutionalised, primarily in Europe, evolving into a substantive obligation for companies. Furthermore, recent geopolitical factors have le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being utilised as a means of supply chain blockad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gulations impact not only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but also their suppliers within the supply chain, thereby placing a burden on compan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o. As most Korean industries rely on developing countries' production networks for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 procurement, strengthening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to respon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a critical issue for Korea.

Grievances received through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in the 52 countries implement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dicate that implement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recognised as a significant challenge. Companies report difficulties complying with the guidelines across various areas, including human rights, employment, and the environment. While supply chain due diligence systems operate to enhance supply cha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 capacity for their implementation varies significantly

between countries. Such asymmetry could potentially lead to instability in the global value chain. Particularly in mineral supply chains, where geopolitical risks and ESG risks intersect,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increasingly emphasised.

As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gulations proliferate, the key challenges facing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categorised as: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capacity, establishing due diligence systems and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Firstly, issue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nd legal procedures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the application of systems suited to developing country conditions, and enforcement capacity within developing countries must be addressed. Second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fundamental conditions for developing country enterprises to respond to due dilig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ue diligence systems and infrastructure. Thirdly, developing country enterprises must address the lack of technical know-how required to access relevant data and navigate due diligence frameworks, as well as financing conditions resulting from stringent due diligence require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actively progressing. Rec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focused on labou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apparel and textiles, agriculture, and the minerals sector. Cooperation content is fundamentally centred on improving labour conditions, ensuring minimum wages, and strengthen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capabilities. In the minerals sector, cooperation from a resource security perspective is emphasised.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building institutional and data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supervisory agency capabilities, providing training and consultancy for SMEs, and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will be crucial for implement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Considering Korea's strategic interests an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hould consider supply chain due diligence capacity-building projects as

a key pillar. Korea's supply chain due diligence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should focus on: ① supporting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city, ② establishing infrastructure to enhance traceability and transparency in developing countries' supply chains, and ③ strengthening sustainable competitiveness and eco-friendly production capabilities. This should be pursued by strategically utilising ODA, seeking linkages with trade agreements, and supporting domestic companies'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

## <책임>

### 김정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팀장

(現, E-mail: jgkim@kiep.go.kr)

#### 저서 및 논문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공저, 2024)

『인도의 인프라 정책 및 수요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개발협력을 중심으로』(공저, 2024) 외

---

## <공동>

### 나승권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skna@kiep.go.kr)

#### 저서 및 논문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23)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공저, 2024) 외

---

#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 2025년

- 25-01 아세안 주요국 여성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에 기반한 생산성 보완 연구 / 김제국·신민금·신민이
- 25-02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 김주혜·양평섭
- 25-03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성과 및 전망 / 이철원·임유진·김초롱
- 25-04 주요국의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전략과 시사점 / 김은미·김소은
- 25-05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 김영산·유광호
- 25-06 유럽의 첨단산업 지원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이현진·임유진
- 25-07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 홍성우·김승현
- 25-08 일본의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이정은
- 25-09 AI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 / 강민지
- 25-10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s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Towards a Matured Economic Partnership / Choong Yong Ahn and Jagannath Panda
- 25-11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 허재철
- 25-12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김정곤·나승권

## ■ 2024년

- 24-01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 오수현
- 24-02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엄준현·이보람
- 24-03 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 정원혁·이예림
- 24-04 중국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 분석 연구: 고대역 메모리 및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 백서인·자오야리
- 24-05 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예의 시사점 / 강문수·이지은
- 24-06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 최용찬·허경무

■ 2023년

- 23-01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김제국
- 23-02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 이규엽·엄준현
- 23-03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 유광호·이지은
- 23-04 동남아 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김남석
- 23-05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 김준동·고준성·강준구
- 23-06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 김지현
- 23-07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 김준동·이성봉·김혁황
- 23-08 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 김주혜
- 23-09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 김홍원·이한나
- 23-10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 정재완·이재호
- 23-11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 금혜윤
- 23-12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 최재희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월까지입니다.

## KII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eong Gon Kim and Seung Kwon Na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개도국에 대한 영향과 함의, 최근 공급망실사 제도의 변화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개도국 당면 대응과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이 공급망실사 역량 지원 사업을 하나의 축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ISBN 978-89-322-2530-2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